

1. 학사에 관한 규정

제정:1994.03.01	개정:2000.03.01	개정:2001.03.01	개정:2002.04.26	개정:2003.04.16
개정:2004.04.26	전문개정:2007.05.01	개정:2008.06.10	개정:2008.09.26	개정:2008.12.01
개정:2010.02.01	개정:2011.03.01	개정:2012.03.01	개정:2012.05.01	개정:2012.06.18
개정:2012.11.01	개정:2013.03.04	개정:2014.03.03	개정:2014.05.19	개정:2014.11.03
개정:2015.04.01	개정:2016.02.01	개정:2016.03.01	개정:2016.05.09	개정:2016.11.01
개정:2017.01.02	개정:2017.04.03	개정:2017.11.03	개정:2018.01.26	개정:2018.06.05
개정:2019.04.01	개정:2019.05.28	개정:2019.08.01	개정:2019.10.07	개정:2020.01.13
개정:2020.03.01	개정:2020.05.04	개정:2020.08.31	개정:2021.02.22	개정:2021.04.12
개정:2021.09.28	개정:2022.01.25	개정:2022.05.02	개정:2022.07.06	개정:2023.03.17
개정:2023.04.24	개정:2023.07.25	개정:2023.09.18	개정:2024.02.05	개정:2024.04.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사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학사에 관련한 사무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6.05.09)

제3조(학생지도) 학생은 수강신청, 교과목이수 및 대학생활에 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등 록

제4조(등록) ① 등록은 매학기 개시전 지정된 기일내에 당해 학기분 납입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필함으로써 완료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을 제외한 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 등록을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3.03.04)

②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2개학기분의 납입금을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2.05.01)(개정 2013.03.04)

③ 납부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개정 2012.05.01)(개정 2014.03.03)

제5조(재입학생 및 복학생의 등록) ① 재입학 예정자는 허가된 학년·학기에 등록하여야 하며, 복학생은 복학 해당 학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예정자와 복학생은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에서 같다)와 학년을 지정받은 후 제4조와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04.01.)(개정 2016.05.09)

③ 일반 재입학생은 당해년도 재입학한 학년의 납입금과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편입생의 등록) ① 편입생의 등록은 편입학 학년 또는 학기를 기준으로 하되, 법정 수업 연한에 충족하는 소정의 학기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편입생이 등록하여야 할 학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02.01)

등록할 학기	해 당 자
2학기	일반대학, 전문대학에서 3학년을 이수하고 4학년 1학기에 편입한 자
3학기	일반대학 3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3학년 2학기에 편입한 자 또는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4학기	학사 편입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에서 2학년 이상 수료자, 전문대학 졸업자가 3학년 1학기에 편입한 자 또는 일반대학에서 3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3학년 1학기에 편입한 자
5학기	전문대학 졸업자가 2학년 2학기에 편입한 자, 일반대학에서 2학년1학기를 마치고 2학년 2학기에 편입한 자
6학기	일반대학에서 1학년을 이수하고 2학년 1학기 편입한 자

제 3 장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제7조(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은 학칙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목표를 구현하고 학문의 발전과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도록 교과간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인접 학문과의 중복을 피하여 능률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2년 주기로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02.05.)

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편성원칙 및 이수구분)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일반선택과정, 교직과정으로 구분하며 이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3.04)(조개정 2016.05.09)

1. 교양과정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하며, 세부영역으로 1-4와 같이 기초교양, 핵심교양으로 구분(202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별표1, 별표1-1, 별표1-2, 별표1-3과 같이 구분한다)한다. 단, 교양교과목은 과목당 3학점 이하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03.01)(개정 2014.03.03)(개정 2016.05.09)(개정 2017.04.03.)(개정 2018.01.26.)(개정 2020.01.13.)(개정 2020.08.31.)(개정 2023.03.17.)(개정 2024.04.01.)

2. 전공과정은 별표1과 같이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 다만, 학과 내규로 정해진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개정 2012.03.01)(개정 2013.03.04.)(개정 2016.05.09.)

3. (삭제 2013.03.04)

4. 일반선택과정은 일반선택, 복수전공, 부전공, 산학연계전공 등의 과정이며 이수자의 성적표 등에 이수 과정명을 표기할 수 있다.(개정 2013.03.04.)(개정 2016.05.09)

5. 교직과정은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으로 구분하며, 교원자격증 취득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16.05.09)

② 교양교육과정은 구암교양교육원장이 편성하여, 교양교육과정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2015.04.01.)(개정 2016.03.01.)(개정 2017.04.03.)(개정 2020.01.13.)(개정 2020.08.31.)(개정 2022.02.01.)

③ 전공교육과정은 학과장이 편성하여 교육과정발전소위원회의 심의, 전공교육센터의 교육과정개발위원회 검토 및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5.04.01.)(개정2016.05.09.)(개정2020.08.31.)(개정2022.02.01.)(개정2024.04.01.)

제9조(전공과정편성) ① 전공과정 편성은 130학점 체제의 경우 90학점 이하, 120학점 체제의 경우 60학점 이하로 하며 부·복수전공 예외학과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3.04)(개정 2014.03.03)(조개정 2016.05.09)(개정 2019.04.01)(개정 2021.02.22.)

② 전공과목은 1학년 1학기, 2학기 교육과정에 각각 6학점 이상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04.01.)(개정 2021.02.22.)(개정 2024.02.05.)

제10조(교육과정위원회) ①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조개정 2016.05.09.)(개정 2020.08.31.)

②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별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자유전공학과, 휴먼서비스학과, 글로벌복지한국어학과, 창업평생교육학과, 사회복지빅데이터학과, 디지털보건재활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는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사범계열 학과의 부전공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다.(개정 2013.03.04.)(조개정 2016.05.09.)(개정 2022.02.01.)(개정2023.04.24.)(개정2024.04.01.)

② 교육과정은 과정중심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유사과목은 통합하여 공통교과목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④ 교양과정운영을 위하여 교양필수, 교양선택 과목의 영역별 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3.03)

⑤ 국내·외 교류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양과목 미이수자로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05.09)

⑥ (개정 2010.02.01)(개정 2011.03.01)(개정 2013.03.04.)(삭제 2016.05.09.)

제11조의2(모듈형 교육과정) ① 각 학과는 전공교육과정 내 분야별로 특화된 모듈(교과목 군 구성)을 운영할 수 있으며, 모듈 내 구성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모듈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신설2022.07.06.)

② 모듈형 교육과정의 그 구성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2022.07.06.)

1. 전공교육과정 내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 중 12학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각 모듈은 그 특성에 따라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모듈 간 교과목 중복은 가능하며 최대 25% 이하로 한다.

제12조(교과목 이수) ① 교과목은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교양과정, 전공과정, 일반선택, 교직과정으로 구분 이수하여야 한다.(조개정 2016.05.09)

② 복학생의 복학 이후 교과목 이수는 복학 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은 해당 입학년도 졸업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05.09)

③ 교육과정 개편에 의해 필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3조(교양과정 이수) ① 교양과정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 과목을 포함하여 40학점(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 36학점,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 입학생 25학점, 2015학년도부터 2020학년도 입학생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보건계열 학과 및 사범계열학과(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25학점), 휴먼서비스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자유전공학과, 글로벌복지한국어학과, 창업평생교육학과, 사회복지빅데이터학과, 디지털보건재활학과는 2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개정 2014.03.03.)(개정 2015.04.01.)(개정 2016.05.09.)(개정 2017.04.03.)(개정 2022.02.01.)(개정 2023.03.17.)(개정 2024.04.01.)

② 교양과정 이수자는 별표1 내지 별표1-4와 과 같다. 단, 외국인인은 교양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0.02.01)(개정 2014.03.03.)(개정 2014.11.03.)(개정 2016.05.09.)(개정 2024.04.01.)

③ 삭제(삭제 2014.03.03.)(신설 2016.05.09.)(개정 2017.04.03)

④ (신설 2010.02.01)(삭제 2016.05.09)

제14조(전공과정 이수) ① 단일 전공자는 전공과목을 48학점 이상(기술교육과, 수학교육과, 영어교육과, 유아교육과, 컴퓨터교육과 및 교원자격 취득을 원하는 간호학과, 디자인학과, 중국학과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50학점 이상, 특수교육과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80학점(표시전공포함)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교육과정과 직장인 등의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편입생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03.01)(개정 2013.03.04.)(개정 2014.11.03.)(조개정 2016.05.09.)(개정 2024.02.05.)

② 복수, 부전공자의 이수학점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사범계열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제외한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주전공 최소 이수학점은 36학점으로 한다.(개정 2015.04.01.)(개정 2016.05.09)

③ 주전공 학과에서 취득한 전공과목 중 복수, 부전공 학과에서 동일과목으로 편성된 교과목은 15학점까지 복수, 부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사범계열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자는 제외한다.(개정 2016.05.09.)(개정 2019.04.01.)

④ 특수교육과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수구분을 전공으로 표기한다.(항신설 2021.02.22.)

제15조(일반선택과정이수) ① 일반선택과목은 주전공 학과 또는 부·복수 전공학과 교과목과 동일한 명칭이 아닌 타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말한다.(개정 2013.03.04)(조개정 2016.05.09)

② 각 학과의 교육과정표에는 일반선택과목을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5.09)

제16조(교직과정이수)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22학점(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학점) 이상 교직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1)(조개정 2016.05.09)

② 교원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 운영규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05.09.)

제16조의2(특별학기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 특별학기(대학 입문학기, 집중학기)에는 별도의 특별교육과정만 운영하거나 정규 교육과정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신설2022.07.06.)

제17조(산학연계 특별전공) ① 산학연계 특별전공은 과정별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산학연계 특별전공이수자가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36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관련과정의 복수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산학연계 특별전공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특별 프로그램과정) ① 2개 이상의 학과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를 특별프로그램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05.09)

② 특별 프로그램과정의 이수학점은 21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이 과정을 이수하면 성적표 등에 이수 과정 명을 표시할 수 있다.

제19조(편입생의 학점인정 등) ①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학점인정절차, 잔여과정 이수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02.01)(개정 2011.03.01.)(개정 2014.03.03.)(개정 2016.05.09.)(개정 2024.02.05.)

② (삭제 2024.02.05.)

③ 삭제(개정 2010.02.01)

④ 삭제(개정 2010.02.01)

⑤ (삭제 2024.02.05.)

제20조(편입생의 잔여과정 이수) (삭제 2024.02.05.)

제20조의2(대학원 교육과정 수강) ① 학부의 교육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조개정 2016.05.09)

② 대학원 교과목의 수강은 학부 6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③ 수강신청은 재학기간 중 3학점 이내로 한다.

제20조의3(학습경험 학점인정) (삭제2023.04.24.)

제 4 장 수 업

제 1 절 수업 계획

제21조(학사일정) 교무입학처장은 다음 학년도 수업계획을 포함한 학사일정을 학년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04.01.)(개정 2016.05.09.)(개정2019.05.28.)

제22조(강의계획서) ① 교원(전임교원, 강사, 특수신분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담당교과목의 주별 수업 내용, 과제물 부과, 성적평가 방법 및 기준, 선수과목과 후수과목 등 학생이 수강신청 할 교과목의 내용과 체계적인 이수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담당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수강 신청 1주 전까지 학사행

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08.01.)(개정 2024.04.01.)

② 강의계획서에는 수업, 성적 이의신청 등을 위하여 담당교수의 전자메일, 연락처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04.01.)

③ 강의계획서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설·보완 후 수강신청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24.04.01.)

④ 직전학기 담당 교과목에 대한 강의개선계획서(CQI보고서)를 모두 입력하여야 해당학기 강의계획서를 입력할 수 있다.(신설 2024.04.01.)

⑤ 강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강학생들에게 수업변경에 대하여 공지 후 강의계획 변경신청서를 교무입학처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04.01.)

제22조의2(강의개선계획서(CQI보고서)) 교원은 강의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 개선하고 효율적인 교과목 관리를 위하여 매학기 1회 담당교과목의 강의개선계획서(CQI보고서)를 작성하여 학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04.01.)

제23조(시간표 편성) 교무입학처장은 학기별 수업시간표를 확정하여, 학기 개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4.01.)(개정 2016.05.09)(개정2019.05.28.)

제24조(수업시간) ① 수업시간은 50분 단위 또는 75분 단위로 운영하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수업시간 편성지침에 따른다.(개정 2014.03.03.)(개정2022.07.06.)

② 교과목의 수업시간은 평일 주간시간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강생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에 배정할 수 있다.(신설 2014.03.03)

제25조(강의개설) ① 전공과목의 수강인원이 15명 이상 일 때, 교양과목은 수강인원이 20명 이상일 때 개설한다.(개정 2011.03.01, 2013.03.04, 2015.04.01, 2019.10.07.)(개정 2022.02.0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무입학처장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04.01, 2019.10.07.)

제25조의2 (삭제) (신설 2020.05.04)(삭제 2022.02.01.)

제 2 절 수강 신청

제26조(수강신청요령)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일 내에 당해 학기 개설교과목에 대해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본인이 직접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의 수강신청은 별도 기간을 지정하여 우선 할 수 있다.(개정 2014.03.03.)(개정 2017.11.03.)

② 전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4.00이상인 자, 타 대학 및 원격강좌 학점교류학생, 총장이 승인하는 과정 이수자는 학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수강신청학점에서 3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고, 전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75미만인 자는 3학점을 감하여 수강하여야 한다.(개정 2010.08.01.)(개정 2024.02.05.)

③ 4학년의 수강신청 최저학점은 1학기 9학점, 2학기 6학점으로 한다.(개정 2010.08.01.)(개정 2014.11.03.)(개정 2016.05.09)

④ 삭제

⑤ 해외현장 학습자와 외국인학생의 수강신청요령은 따로 정한다.

⑥ 외국인학생은 한국어 능력에 따라 수강신청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는 수강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2.05.01)

제27조(수강지도 및 사전신고) ①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강신청 시 교양필수, 학과지정 필수과목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하급 학년의 미이수 필수과목부터 신청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졸업학점을 충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6.05.09.)(개정2019.05.28.)

②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교과목 담당교원의 자녀인 경우 또는 재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수는 사전에 총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19.05.28.)

제28조(수강신청제한) ①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경우에는 일반선택과목, 전공과목 순으로 삭제한다.

(개정2014.03.03.)

③ 교무입학처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2014.03.03)(개정 2015.04.01.)(개정 2016.05.09)(개정2019.05.28.)

제29조(수강신청학점제한) ① (삭제 2012.05.01)

② (삭제 2012.05.01)

제30조(수강신청 정정) ① 수강신청은 정정기간 내에 지도교수와 교무입학처장의 지도를 받아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정정할 수 있다.(개정 2015.04.01.)(개정2019.05.28.)

② 교과목의 폐강 등으로 인하여 수강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정기간 내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05.09)

③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정정기간의 만료로 확정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31조(학적변동자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입학년도 교육과정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08.01)

② 복학 또는 재입학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학 또는 재입학한 학년도의 교육과정표에 따른다.(개정 2010.08.01)

제32조(재수강) ① 동일과목(과목명과 학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및 대체과목으로 지정된 경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 이하일 경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수강 할 수 있다. (개정 2015.04.01.)(개정2019.05.28.)(개정2020.01.13.)(개정2023.09.18.)

② 학기당 재수강신청 과목은 2과목 이하로 제한하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과목의 재수강은 2 회로 제한한다.(개정 2015.04.01.)(개정 2016.02.01.)(개정 2020.01.13.)

③ 이미 이수한 성적과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 중 상위 성적을 인정하고 하위 성적은 무효로 한다. 다만, 성적이 동일할 경우 재수강 성적으로 인정한다.(신설 2020.01.13.)

④ 재수강교과목의 성적은 A 등급까지만 취득할 수 있고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에는 재수강한 교과목임 (R)을 표기한다.(신설 2020.01.13.)

⑤ 재수강성적이 상위인 경우에는 당초의 해당 학기 성적 평균 평점을 다시 산출하며, 재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당초의 해당 학기 학사경고는 계속 유효하다.(신설 2020.01.13.)(개정 2021.09.28.)(개정 2021.09.28.)

제33조(수강과목 취소) ① 수강신청한 과목은 매학기 소정의 기간내에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10.02.01.)

② 전항의 경우 이를 다른 과목으로 정정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다.(개정 2010.02.01)

③ 수강신청을 취소하여 수강신청 기준학점에 미달한 때에는 당해 학기 기준으로 선발하는 각종 장학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수강신청의 취소는 3과목 이내로 한다. 다만, 취소된 이후의 수강신청 학점은 제26조 3항의 수강신청 최저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3.03.04)

제33조의 1(교차수강) ① 영암캠퍼스와 당진캠퍼스간에는 전부 또는 일부 교과목에 대하여 교차수강 할 수 있다.(신설 2013.03.04)(개정 2015.04.01.)

② 교차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차수강신청서를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03.04.)(개정 2014.11.03.)(개정 2015.04.01.)(개정2019.05.28.)

제 3 절 수업운영

제34조(수업방법) ① 수업방법은 강의, 세미나, 개인교수 등으로 구분하고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수한다. (개정 2016.05.09)

② 대형강의, 컴퓨터관련강의 및 원격강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 조교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각 학과에서는 분담강의로 수업할 수 있다.(개정 2016.05.09)

제35조(강의설문평가) 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의설문평가를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1.03.01)(개정2020.01.13.)

② 강의설문평가 분석 결과 등에 의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원을 포상할 수 있으며, 하위평가를 받은 교원은 별도의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01)(개정2020.01.13.)

③ 강의설문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강의설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03.01)(개정2020.01.13.)

제36조(휴강·결강과 보강) ① 교원이 휴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에 해당되어 휴강을 하는 경우 교무입학처장에게 휴강·결강계 및 보강·대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매체를 이용하여 교과목 담당 교수가 직접 전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입력 할 수 있다.(개정 2015.04.01.)(개정2019.05.28.)(개정 2020.03.01.)

1. 공휴일, 개교기념일 등 학교에서 휴일을 정하는 경우

2. 출장 및 질병 등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본래의 수업시간에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② 총장은 제1항 제1호에 의한 휴강의 경우 보강일을 정하여 모든 교원 및 학생들에게 이를 공지하고 해당 보강일에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20.03.01.)

③ 교원은 제1항 제2호에 의한 휴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주전에 휴강사유, 보강일시 및 보강장소가 명시된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03.01.)

④ 제3항의 경우 보강일시 및 보강장소는 수강생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보강에 대한 내용은 학과 홈페이지 또는 학과 사무실 게시판, 문자발송 등을 통해 공지하고 수강생 전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01.)

⑤ 교원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긴급하게 개별 휴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장을 거쳐 교무입학처장에게 보고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03.01.)

⑥ 부득이한 사유로 보강일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된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20.03.01.)

⑦ 보강결과보고서는 학과장을 경유하여 보강 후 7일 이내에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보강으로 간주한다.(신설2020.03.01.)

⑧ 교무입학처장은 보강 및 대강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0.08.01.)(개정 2015.04.01.)(개정 2019.05.28.)(신설 2020.03.01.)

⑨ (삭제 2019.04.01.)

제36조의2(수업점검 및 수업모니터링) ①총장은 수업시간표(보강수업 포함)에 따라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업 점검팀 및 학생들로 구성하는 수업 모니터링 단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신설 2020.03.01.)

② 수업점검(모니터링)결과 강의시간 및 강의실 임의변경, 무단 휴강, 미보강 등 이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른 처분계획을 마련하여 교원업적평가 반영, 강사에 대한 재임용 평가 반영 등 소정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0.03.01.)

③ 수업 점검팀 및 수업 모니터링 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0.03.01.)

제37조(출석수) ① 교원은 매 수업시간 마다 수강생의 출결관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매체를 이용하여 출결관리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5.04.01.)

② 수업출석률이 매학기 말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에 미달한 학생은 정기시험, 재시험 또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성적은 F(0점)로 처리한다.(신설 2015.04.01.)

제38조(시간강사의 위촉) (삭제(2019.08.01.))

제39조(우수강사) 매 학기별 약간 명을 우수강사로 선정할 수 있다.

제40조(특별강의) ① 교양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특별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강의 과정을 이수하면 소정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15시간 이상의 이론수업을 1학점 기준으로

로 과정당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③ 특별강의에서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41조(기초학습능력평가등) ① 신입생에 대해서는 기초학습능력 진단 평가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05.09)(개정2018.01.26)

② 전항의 결과에 따라 일정 기준 미달 자에 대해서는 기초학력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1.26)

③ 수시모집 합격자에 대하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강의를 할 수 있다.(항신설 2018.01.26)

④ 제3항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때에는 1학년 1학기에 이수한 학점 외에 2학점을 별도로 인정하며, 이수한 학생의 성적은 P(pass)로 처리한다.(항신설 2018.01.26)

제42조(교외출강) 교원(이 조에서 강사, 특수신분교원은 제외한다)의 교외출강은 「교원의 책임시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다.(개정 2014.11.03.)(개정2019.08.01.)

제43조(보조교재의 배포) ① 과목담당 교원은 필요한 문헌 또는 과제의 유인물을 수강생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유인물 인쇄를 관련 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수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교재 또는 매체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교재 또는 매체제작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교외교육) ① 교외교육은 학사일정 및 강의계획서에 의하고 교외교육은 시행 3일전에 교외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 교무입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업내용과 연관성이 부족한 교외교육의 경우는 보강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03.04)(개정 2014.03.03)(개정 2015.04.01.)(개정2019.05.28.)

② 교육실습, 현장실습 또는 전공과 밀접한 현장견학의 경우에는 교무입학처장의 허가를 얻어 수업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수업시간을 단축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3.03.04)(개정 2015.04.01.)(개정2019.05.28.)

③ 삭제

제45조(출석인정) ①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석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소속 학과장을 거쳐 담당 과목

교원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2013.03.04.)(개정 2015.04.01.)(개정 2016.11.01.)(개정2019.08.01.)(개정2021.02.22.)(개정2023.09.18.)

1. 질병 : 4주 이내

2. 본인 결혼 : 7일 이내

3.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사망 : 5일 이내

4. 자녀, 형제자매, 백숙부모의 사망 : 3일 이내

5.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 예비군 동원·훈련 참여로 인한 사유 : 해당기간

6. 학술답사, 견학, 교육실습, 현장실습 등 : 해당기간

7.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규모의 각종대회 또는 해외에서 개최하는 대회의 훈련 및 경기출전 기간 : 해당기간

8. 다른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해당기간

9.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학내·외 행사 및 이에 준하는 사항 : 해당기간

②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창업, 인턴, 국비교육 등 포함)에 대해 출석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총장이 허가하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출석인정 기준 등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항신설 2021.02.22.)

제45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불리한 처우금지) ① 해당 학과장 및 교과목 담당 교원은 학칙 제37조의2에 의거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을 받는 학생이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2023.09.18.)(개정 2024.04.01.)

1. 해당 수업을 결석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 2. 해당 수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성적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 ② 교과목 담당교원은 매학기 종료 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대상자의 성적처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23.09.18.)(개정 2024.04.01.)

제 4 절 계절학기

- 제46조(개설시기) 계절학기의 수업은 1학기에는 하계 방학 중, 2학기에는 동계 방학중에 실시할 수 있다.
- 제47조(개설과목) ① 개설과목은 교양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공과목 또는 특별강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 ② 제25조의 규정은 이 조에 준용한다.(개정 2010.02.01.)(개정 2014.11.03)
- 제48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6학점 범위내로 한다.
- ② 수강신청 대상자는 본교 및 학점교류 대학의 재학생으로 하며,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9조(계절학기운영) ① 계절학기 수업일수는 15일(1학점당 수업시수는 15시간 이상)로 하며,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하여야 성적을 취득 할 수 있다.(개정 2014.03.03)
- ② 계절 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학년 및 졸업학점으로만 인정하고 성적경고, 장학생 선발, 조기졸업 등에 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계절학기의 수업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④(신설 2013.03.04.)(삭제 2016.11.01.)

제 5 장 시험 · 성적 · 학점

제 1 절 시험

- 제50조(시험의 구분)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추가시험, 재시험, 졸업논문, 실기 · 작품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 등으로 구분한다.
- 제51조(정기시험) 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학기말 시험으로 구분한다.
- 제52조(수시시험) 수시시험은 학습과제, 세미나 등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담당교수 책임으로 한다.
- 제53조(추가시험) ① 병역 · 질병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개시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유서를 갖추어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담당교수가 시행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②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전승인을 얻지 못한 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와 함께 사유서를 제출하여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4조(재시험) ① 학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정기시험에 불응한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55조(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각 학과의 특성에 따라 졸업논문제출 또는 졸업 종합시험(토익, 토플, 기타)등에 의하여 졸업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 제56조(실기 · 작품발표) 각 학과의 특성에 따라 실기·작품 발표 성적을 평가하여 졸업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 제57조(시험관리) 교양과목 또는 공동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의 시험은 공동으로 관리한다.
- 제58조(부정행위자의 처리) ① 시험 중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감독교수는 지체 없이 부정행위 내용을 시험지 상단에 기록하고 날인한 후 당해 시험지를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2019.05.28.)
- ② 부정행위자는 소속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징계하고 교무입학처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5.04.01.)(개정 2016.05.09)(개정2019.05.28.)

③ (삭제 2016.05.09)

제59조(징계양정기준) 부정행위자의 처리양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05.09)

1. 1과목 부정행위자는 해당과목을 F(0점)등급 처리한다.(개정 2016.05.09)
2. 2과목이상 부정행위자는 해당과목을 F(0점)등급으로 하며 유기정학을 부과한다.(개정 2016.05.09)
3. 대리시험 행위자 및 요청자는 해당학기 전 과목을 F(0점)등급으로 하며 무기정학을 부과한다.(개정 2016.05.09)
4. 시험 중 감독교수의 정당한 명에 불복한 자는 시험장 퇴장 및 해당과목을 F(0점)등급 처리한다.(개정 2016.05.09)

제 2 절 성적 및 학점

제60조(성적 평가) ①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등급과 평점으로 분류 표시 하며, 학적부의 기록은 등급으로 기재한다.

등 급	실 점	평 점	등 급	실 점	평 점
A ⁺	95 ~ 100	4.5	C ⁺	75 ~ 79	2.5
A	90 ~ 94	4.0	C	70 ~ 74	2.0
B ⁺	85 ~ 89	3.5	D ⁺	65 ~ 69	1.5
B	80 ~ 84	3.0	D	60 ~ 64	1.0
			F	0 ~ 59	0

②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원이 학생의 출석, 과제 및 시험 성적 등을 10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하되 아래와 같이 배점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수 교과목의 성적은 별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6.02.01.)(개정2019.08.01.)

1. 정기시험 : 40 ~ 60%(개정 2016.11.01.)(개정 2018.01.26.)
2. 출 석 : 20 ~ 30%(개정 2018.01.26.)
3. 부정기시험 및 과제 : 20 ~ 30%(개정 2016.11.01.)(개정 2018.01.26.)

③ (삭제 2018.01.26.)

④ 학과장 또는 교과목담당 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시험 또는 추가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성적은 B+를 초과 할 수 없다.(항신설 2016.02.01.)(개정 2018.01.26.)(개정2019.08.01.)

⑤ F학점자 처리 기준은 아래 항목과 같다.(항신설 2016.02.01)

1. 시험부정행위자
2.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미응시자 단, 군입대로 인한 기말고사 미응시자는 제외한다.
3.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에 미달한 결석자
4. 성적 미달자(개정 2018.01.26.)

제61조(성적평가의 방법) ① 성적은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그 등급별 분포가 A이상 40퍼센트 이하, C+이하가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상대평가 하여야 한다.(개정2021.03.01.)(개정2014.11.03.)(개정2015.04.01.)(항신설2016.02.01)(개정 2022.01.25.)(개정 2023.07.25.)

② 수강인원 대비 소수점은 A이상 40퍼센트 이하를 적용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고, C+이하 10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림 할 수 있다.(항신설 2016.02.01.)(개정 2022.01.25.)(개정 2023.07.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적등급별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항신설 2016.02.01.)

1. 수강인원이 5명 이내인 교과목
2. 임상실습, 교육실습, 현장실습 등 외부위탁 교과목
3. P/F로 평가한 교과목

4. 외국인 과정의 개설 교과목(호 신설 2024.02.05.)
5. 교내 위탁교육 및 협약에 의한 개설 교과목(호 신설 2024.02.05.)
6. 캡스톤 디자인 개설 교과목(호 신설 2024.02.05.)
7. 별지 제18호 서식 상대평가 미적용 사유서에 따라 교무입학처장이 승인한 교과목(개정2019.05.28.)(호 변경 2024.02.05.)

제61조의2(학점인정 및 시기) ① D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은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6.02.01.)

② 총 수업시간의 4분의3이상을 출석하고 군(질병휴학 포함) 휴학한 자의 해당학기 성적은 중간고사(수시 시험 포함)성적을 참조하여 인정하거나,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학점인정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

제62조(성적평점평균 산출 및 실점환산) ①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을 산출할 때에는 평점에 학점을 곱하여 그 합계를 총 신청학점 수로 나눈 값을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P와 F로 분류한 교과목의 학점은 평점평균을 산출할 때 총 신청학점 수에서 제외한다.

②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을 실점으로 환산할 때에는 별표3에 실점환산표에 의한다.(개정 2016.05.09)

③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시 교직과정 이수자의 평점평균 산출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63조(삭제 2016.05.09)

제64조(성적확정) ①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기말 시험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성적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05.09.)(개정2019.08.01.)

② 교무입학처장은 소정의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을 거쳐 성적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04.01.)(개정 2019.05.28.)

③ 교과목 담당교원은 성적이 확정되면 출석부와 성적처리내역서에 확인 서명을 하여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4.01.)(개정 2016.02.01.)(개정2019.08.01.)

④ 시험답안지 등 성적평가 자료는 교과목담당 교원이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강사와 특수신분교원의 성적평가자료는 소속 학과장이 관리한다.(항신설 2016.02.01.)(개정2019.05.28.)(개정2019.08.01.)

제64조의2(성적열람과 이의신청) ① 교과목 담당교원은 성적열람기간에 성적평가결과를 학사인트라넷 또는 학과 게시판에서 공시하여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02.01.)(개정2019.08.01.)

②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열람기간 동안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2019.08.01.)

③ 교과목 담당교원은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으면 성적열람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개정2019.08.01.)

제64조의3(교원 자녀 성적처리) ① 학생이 교과목 담당교원의 자녀인 경우, 해당 교원은 최종 성적 확정 전에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 산출근거 등을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5.28.)

② 학과장은 제출된 성적에 대해 공정 여부를 확인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9.05.28.)

제64조의4(위반 시 조치) 총장은 제27조제2항 및 제64조의3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교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05.28.)

제65조(성적의 정정) ① 확정된 성적은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성적표에 오기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9호 서식 성적정정원에 의하여 교무입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정정할 수 있다.(개정 2016.02.01.)(개정2019.05.28.)

② 장학금수혜대상자 사정은 학기말 1차 성적확정 자료에 의한다.(개정 2016.02.01.)

제66조(취득성적의 포기) (삭제 2015.04.01.)

제67조(학기 재이수) 이수한 과정을 다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학기 재이수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4.11.03)(개정 2015.04.01.)

제68조(학기 재이수자의 학점처리) 학기 재이수자(재입학자 포함)가 이미 취득한 성적 중에서 재이수하려고 하는 학년 학기 이후의 성적은 삭제된다.(개정 2014.11.03.)

제69조(석차확정) ① 매 학기 성적이 확정되면 다음에 의하여 학기 및 학년석차를 정한다.

1. 제62조 제1항에 의한 성적이 높은 자
 2. 평점(평균)이 높은 자 (개정 2015.04.01.)
 3. 해당학기의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개정 2015.04.01.)
 4. 최종학기 성적이 높은 자
- ② 취득성적포기 또는 성적정정의 경우에는 취득성적포기 또는 성적정정 전의 석차로 한다.
- ③ 졸업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이 졸업석차를 확정한다.
1. 전기졸업자 : 전기졸업자를 대상으로 석차 확정
 2. 후기졸업자 : 전기졸업자와 후기졸업자를 통합하여 석차를 확정하고, 이미 확정된 전기졸업자의 석차는 변경시키지 않는다.
 3. 조기졸업자 : 전기졸업자 또는 후기졸업자를 통합하여 석차를 확정한다.
- ④ 계절 학기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기석차에는 반영하지 않고 학년 및 졸업석차에는 반영한다.

제 6 장 졸 업

제70조(졸업 및 수료사정) ① 졸업(수료)사정은 소속 학과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사정하고 총장이 확정한다.(개정 2016.05.09)

② 졸업사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졸업에 필요한 학점취득 및 졸업 작품, 졸업종합시험, 졸업논문 등의 합격 여부(개정 2013.03.04.)(개정 2017.01.02.)
2. 수업연한의 충족여부 또는 조기졸업 여부
3. <삭제 2012.03.01>

③ 수료사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졸업에 필요한 학점취득 여부(개정 2016.05.09)
2. 수업연한의 충족여부(개정 2016.05.09)

④ 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예정일 2주일 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의 학위취득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2.05.01.)(개정 2015.04.01.)(개정2019.08.01.)

⑤ 학위취득유예신청자의 등록금 및 수강신청은 학점 등록제 기준을 적용한다.(개정2019.08.01.)

⑥ 학생의 학위취득유예 기간은 통산하여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의 1.0배 이내로 정한다(신설 2012.05.01.)(개정2019.08.01.)

제71조(학점등록제) ① 수업 연한 만료 시까지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학위를 받지 못한 자는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개정 2016.05.09)

② 수업연한 이후에는 수강신청 하한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정한 등록금을 납부한다.

제72조(명예졸업) ① 본교 재학 중 천재지변, 전시 또는 이와 유사한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적된 자로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였거나 본교의 명예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게는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05.09)

② 명예졸업증서는 소속 학과 또는 관계부서의 제청에 의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05.09)

③ 명예졸업증서는 학위증서를 준용한다.

제 7 장 전과(부)

제73조(전과) 전과(전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모집단위별 전과 허용인원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과 및 계열의 특성과 교육환경 여건에 따라 전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05.09)

- 제74조(전과신청) ① 학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전과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범계열 학과로 전과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면접고사 및 인·적성검사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2.10.01.)(개정 2014.05.19.)(개정 2015.04.01.)(개정 2016.05.09.)(개정 2019.04.01.)(개정 2024.02.05.)(개정 2024.04.01.)
- ② 제1항에 의한 전과신청은 학사행정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신설 2024.04.01.)
- 제75조(허용범위) 전과는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허용하되 사범계열은 입학정원의 20%,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의 경우에는 입학정원 여석의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개정 2016.05.09.)(개정 2024.02.05.)
- 제76조(허가) 전과는 전입학과의 심의를 거쳐 교무입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05.09.)(개정 2016.11.01.)(개정 2019.05.28.)
- 제77조(등록) 전입학과의 납입금과 전출학과의 납입금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16.05.09)
- 제78조(전과(부)의 제한) (삭제 2012.05.01)
- 제79조(교과목 이수) ① 전과자는 전입 학과의 당초 입학생기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05.09)
- ② 전과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이 전과한 학과의 교과목과 동일한 때에는 전과한 학과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05.09)
- ③ 전과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에서 요구하는 교양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05.01)(개정 2016.05.09)

제 8 장 복수전공

- 제80조(복수전공) ① “복수전공”이라 함은 주전공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함을 말한다.
- ② 복수전공은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자유전공학과, 휴먼서비스학과, 글로벌복지한국어학과, 창업평생교육학과, 사회복지빅데이터학과, 디지털보건재활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사범계열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범계열 학과의 경우에는 사범계열 학과 학생과 교직이수예정자에 한하여 복수전공을 허용하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해당학과장은 복수전공 허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05.09.)(개정 2020.01.13.)(개정 2021.02.22.)(개정 2023.04.24.)(개정 2024.04.01.)
- ③ 복수전공의 이수는 2학년 1학기부터 허용되며, 복수전공 이수대상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복수전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4.01.)(개정 2020.01.13.)
- 제80조의2(복수전공 이수범위)복수전공 이수 대상학과에서는 복수전공을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용여건을 감안하여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20.01.13.)
- 제80조의3(교육과정 개설 및 수강지도)모든 대상학과에서는 복수전공 과정 이수를 위하여 해당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편성 및 개설하여야 하며, 이수를 위한 수강지도는 주관학과에서 담당하여 이수 교과목 및 선이수 지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20.01.13.)
- 제80조의4(실험실습비)복수전공과정에서 실험실습을 요하는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이에 따르는 비용을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01.13.)
- 제81조(복수전공허가) 복수전공 이수 대상자는 복수전공 희망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입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04.01.)(개정 2016.05.09.)(개정 2019.05.28.)(개정 2020.01.13.)
- 제82조(복수전공 이수) ① 복수전공을 이수대상자는 복수전공 학과에서 정한 전공필수 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05.09.)(개정 2020.01.13.)
- ② 복수전공 신청 이전에 복수전공 학과 교과목을 이수한 때에는 복수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03.03.)(개정 2016.05.09)

③ 졸업사정 시점까지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가 부전공 자격을 신청 하는 경우, 부전공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부전공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83조(복수전공 학위 수여) ① 복수전공 신청자 중 졸업사정 기간에 복수전공 과정 수료사정을 거쳐 확정 된 자에 한하여 복수전공 학위를 수여하고 졸업증서에 표기 한다.

②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 한다.

제84조(복수전공의 포기)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복수전공·부전공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4.01.)

제 9 장 부전공

제85조(부전공) 부전공은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자유전공학과, 휴먼서비스학과, 글로벌복지한국어학과, 창업평생교육학과, 사회복지빅데이터학과, 디지털보건재활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사범계열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학과에서는 필요한 경우 부전공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05.09.)(개정 2020.01.13.)(개정 2021.02.22.)(개정 2024.04.01.)

② (삭제 2016.05.09)

③ <삭제 2012.03.01.>(신설 2015.04.01.)(삭제 2016.05.09)

④ <삭제 2012.03.01.>

제86조(부전공과목 편성) 부전공 과목은 부전공 학과에서 편성한 모든 전공과목으로 한다.(개정 2016.05.09)

제87조(부전공 이수) 부전공자는 부전공 이수 학과의 전공과목을 21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03.04)(개정 2016.05.09)

② (신설 2014.03.03)(삭제 2016.05.09)

제88조(부전공 자격취득) ① 부전공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는 졸업사정 시 그 자격 취득 여부를 확정 하고 졸업증서에 표기한다.

② 주전공 학과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주전공 졸업 시까지 부전공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5.09)

제88조의2(준용) 제80조 제3항, 제80조의2, 제80조의3, 제80조의4, 제82조 제2항, 제84조는 부전공에 준용 한다.(조 신설 2016.05.09.)(개정 2020.01.13.)

제89조(소속변경) ① 소속변경은 소속 학과의 폐과 또는 명칭변경 등 교육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6.05.09.)

① 소속 학과의 폐과 또는 명칭변경 등 교육환경 변화 등으로 소속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기간 내에 별지 제20호 서식의 소속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장 및 소속 변경할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소속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일괄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11.01.)

② 소속변경은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의 정원을 고려하여 학년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05.09)

③ 소속변경 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이를 모두 인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05.09.)

④ 소속변경된 후에는 변경된 학과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미 납부한 납입금과 차액이 발생할 때에는 추가징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신설 2016.11.01.)

제 10 장 조기졸업

제90조(조기졸업)“조기졸업”이라 함은 6학기 또는 7학기(계절학기 이수 제외)를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경우에 학사학위를 수여함을 말한다.

제91조(조기졸업 신청) 조기졸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조기졸업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4.01.)

제92조(조기졸업 신청자격) <삭제 2012.03.01>

제93조(조기졸업 자격) ① 조기졸업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의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3.01)(개정 2016.05.09)

1. 매 학기 평점평균이 4.00 이상이어야 한다. 평점평균은 재수강 또는 취득성적 포기 이전의 평점평균을 말한다.(개정 2016.05.09)
2. 전 학년 평점평균이 4.25 이상이어야 한다. 평점평균은 취득성적 포기 이전의 평점평균을 말한다.(개정 2016.05.09)
3. 과락과목이 없어야 한다.
4. 학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②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제100조 수업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05.09)

제94조(조기졸업 허가) ① 조기졸업을 신청하고 제93조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조기졸업을 허가 한다.(개정 2014.05.19.)(개정 2016.05.09)

② (삭제 2015.04.01.)

③ 외국인 학생으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졸업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장 학사경고

제95조(학사경고 및 학습역량 개선) ① 매 학기말(계절학기 성적은 제외한다) 평점평균이 1.75미만인 자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8학기(편입생인 때에는 4학기) 이후 성적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개정 2016.05.09.)(개정 2021.09.28.)

② 학사경고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소속 학과장 및 지도교수, 학생지도 관련 행정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09.)(개정 2021.09.28.)(개정 2021.09.28.)

③ (삭제 2011.03.01.)

④ 학사경고자 명단을 통보받은 해당 학생의 소속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다음 학기에 2회 이상 면담 등 특별지도를 하고, 그 결과를 교무입학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8.)(개정 2021.09.28.)

⑤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상담센터 등 학생지도 관련 부서장은 매학기 교무입학처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학사경고자와 학업저성취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교무입학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1.09.28.)

⑥ 학사경고자로 확정된 자는 다음 학기 개시 전 또는 학기 개시 후 1회 이상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능력 향상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1.09.28.)

⑦ 학사경고자와 학업저성취학생에 대한 관리체제는 교무입학처에서 매년 단위로 점검하고, 개선 계획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1.09.28.)

제 12 장 휴학·복학·퇴학 및 재입학(개정 2015.04.01.)

제96조(일반휴학)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휴학할 수 있다.(개정 2016.05.09)

1. 가정 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자.
2.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는 자. (개정 2012.03.01)

② 해당학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질병·기타 부득이 하다고 소속 학과장이 인정할 경우 수업일수 4분의3 이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03.01)(개정 2015.04.01.)(개정 2016.05.09)

③ 일반휴학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학원 (소정양식), (질병일 때에는 의사진단서, 기타 증빙서류 등)

- 2. 사유 및 지도교수 면담 확인서
- 3. 서약서<별지 제7-1호 서식>(개정 2015.04.01.)

④ (삭제 2016.05.09)

⑤ 휴학기간은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하며 통산하여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 휴학자의 의무 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4.01.)

⑥ 제5항의 범위 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복학 신청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입학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10.01)(개정 2015.04.01.)(개정2019.05.28.)

⑦ (삭제 2011.03.01)

⑧ (삭제 2011.03.01.)

제97조(군휴학원 제출) ①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하는 자는 입영일 7일전까지 군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입영한 때에는 지체 없이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4.01.)(개정 2016.05.09)

②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휴학원 1통(소정양식)
- 2. 입영통지서 사본 1통 또는 군복무확인서 1통
- 3. 서약서 1통(소정양식)

③ 병역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귀가하거나 병역법 제62조와 제63조에 따라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전역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교무입학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5.04.01.)(개정 2016.05.09)(개정2019.05.28.)

1. (삭제 2016.05.09)

2. (삭제 2016.05.09)

3. (삭제 2016.05.09)

④ 군휴학원에 따른 휴학일은 휴학원 제출일로 하고 입영 후 휴학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입영일자를 휴학일로 본다. 휴학원(일반휴학 포함) 제출일은 수업일로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6.05.09)

제97조의2(휴학취소) 휴학생이 휴학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휴학 취소원을 휴학처리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5.04.01.)

제98조(복학 및 복학 유예) ① 일반휴학자는 휴학일로부터 1년(2학기 이내)이내 복학하여야 하고, 군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2학기 이내) 이내 해당 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개정 2016.05.09)

②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복학원을 매 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전역이 예정된 자가 복학을 원할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다.(개정 2015.04.01.)

③ 군복무 중 장기복무로 전환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복무확인서와 취학동의서(부대장 취학허가서)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다.(개정 2016.05.09)

④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복학원 1부
- 2. 군복학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또는 전역증 사본 1부
- 3. 기타 필요한 서류

⑤ 제출된 복학원은 교무입학처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개정 2015.04.01.)(개정2019.05.28.)

⑥ 휴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수확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총장은 복학을 유예 시킬 수 있다.(신설 2024.04.01.)

제98조의 2(자퇴) 자퇴를 하고자하는 자는 보증인이 연서한 별지 제12호 서식의 자퇴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면담과 교무입학처장의 확인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5.04.01.)(개정2019.05.28.)

제99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학과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제적된 학과의 같은 학년 같

은 학기 이하로 허가할 수 있다. 이 때 총 정원의 산출은 정원 내와 정원 외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단, 사범계열 학과 및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개정 2016.05.09.)(개정 2024.02.05.)

② (삭제 2011.03.01)

③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한 경우 재입학 심의위원회에서 재입학의 허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⑤ 재입학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고학년(제적 당시 학년을 기준으로 함)
2. 성적 우수자
3. 연장자

⑥ 신청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재입학원서 1부<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15.04.01.)>
2. 성적증명서 1부

⑦ 재입학은 교무입학처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04.01.)(개정2019.05.28.)

제 13 장 수업 연한

제100조(수업연한) 각 학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개정 2016.05.09)

② (삭제 2016.05.09)

제 14 장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제101조(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① 재학생 또는 졸업생은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등 학적부 기재사항이 상이하거나 변경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05.09)

②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학적부기재사항정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4.01.)

제 15 장 제증명 발급

제102조(학생증 발급) ① 신입생(편입생 포함)에 대하여는 입학허가 후 학생증을 발급한다.

②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3조(증명서의 종류) 본교에서 다음의 증명을 교부한다.(개정 2016.05.09)

1. 졸업증명서
2. 졸업예정증명서
3. 재학증명서
4. 휴학증명서
5. 제적증명서
6. 수료증명서
7. 성적증명서
8.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9. 부전공이수확인서
10. 입학성적증명서
11. 기타증명서

제104조(발급처) 제증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장명의로 발급한다.(개정 2015.04.01.)

제105조(발급신청) ① 증명의 발급은 인적사항, 증명서 종류, 발급 통수 등을 기재하여 신청한다.(개정 2016.

05.09)

② 증명의 발급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또는 인터넷증명발급 등의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03.01.)(개정 2016.05.09)

제106조(발급대상 및 기준) ① 증명은 본교 졸업생, 재학생, 제적생, 수료생 본인의 신청에 의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증명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05.09)

② 졸업예정증명서는 최종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서 졸업이수학점 이상 취득이 가능한 자에 대하여 수업일수 4분의1 이후에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05.09)

③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요건에 해당하고 교직이수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때 발급받을 수 있다.

④ 기타 증명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7조(수수료) 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05.09)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정으로 인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제 6조(편입생의 등록), 14조(교양과정 이수) 및 19조(편입생의 학점인정)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별표1>의 교과목 이수표는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조 1항 및 제26조 7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변경으로 대학명칭을 “대불대학교”에서 “세한대학교”로 변경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하되, 제49조(계절학기운영) 4항 및 제70조(졸업 및 수료사정) 2항 1호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제61조의 경우 2014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으로 「성적처리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05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4월 03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하되 2019. 3.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제35조 (강의설문평가)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2019학년도 제2학기 강의설문평가결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제32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0학년도 1학기 이후부터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에 대하여 적용하며, 제20조의3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의2는 2020학년도 제1학기에 적용을 배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3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I. 교과목 이수표

1. 교양교과목 이수표(개정 2011.03.01)(개정 2013.03.04)(개정 2014.03.03)(개정 2014.05.19)(개정 2015.04.01.)(개정 2016.03.01.)(개정 2016.05.09)(개정 2017.04.03.)(개정 2019.04.01.)(개정 2020.01.13.)

이수구분		이수내용	필수 이수 학점	이수 대상	비고
소양교육	세한실사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한실사구시 I II III IV 4학점 필수 이수 	4학점	2017학년도 신입생 부터 적용	
	인성함양				
	자기개발과 진로				
핵심교양	인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영역을 선택하여 각 1과목 이상 필수 이수(총 6학점 이상 선택 필수 이수) ▪ 단, 소속계열 영역 1과목 필수 이수해야 함 	6학점 이상		
	사회과학				
	자연과학 및 공학				
기초교육	융합과통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와 표현 교과 필수 이수 ▪ 외국어영역 교과 중 1과목 필수 이수 ▪ IT정보기술교과 중 1과목 필수이수 	6학점 이상		
	외국어				
	의사소통				
	IT정보기술				
수학 및 기초과학	수학 및 기초과학				
	수학 및 기초과학				
교양교육과정 이수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36학점 (보건 및 사범계열은 26학점) 이수 ▪ 16학점은 필수 이수학점 			전학과	

- 1) 2016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세한실사구시(구 자율세미나) 이외의 교양과목은 자율적으로 이수할 수 있다.
- 2) 교양(교양필수, 교양선택)교과목은 36학점(보건계열학과와 사범계열학과의 경우는 26학점)이상 반드시 이수하되 이 중 16학점은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 3) 단, 2012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교양(교양필수, 교양선택)교과목을 36학점, 2013학년도 및 2014학년도 신입생은 25학점,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은 36학점(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보건계열학과와 사범계열학과의 경우는 25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4) 보건계열학과에는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언어치료청각학과, 작업치료학과가 이에 해당하며 사범계열학과에는 기술교육과, 수학교육과, 영어교육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가 이에 해당한다.
- 5) 2012~2019학년도 교양이수학점 비교 표

구분	교양 이수학점	비고
2012학년도 이전 신입생	36학점	자율세미나 최소 4학점이상 이수
2013~2014학년도	25학점	자율세미나 최소 4과목이상 이수
2015~2016학년도	36학점 (40→36조정)	보건·사범계열 25학점/세한실사구시(기존 자율세미나) 4학점 필수 이수
2017~2019학년도	36학점 (16학점 필수 이수)	보건·사범계열 26학점/세한실사구시 4학점 필수 이수

1-1. 교양교과목 이수표(2020학년도 신입생)(개정 2020.08.31.)

이수구분		이수내용	이수대상	
제한실사구시 I ~ IV		비교과 영역으로 변경	2020학년도 신입생 대상	
기초교양	기초학습역량	전과목 4학점 필수 -사고와표현(2학점), 창의적사고와코딩(2학점)-		
핵심교양	6 대 핵 심 역 량	종합적사고역량		영역별 1과목 필수 (8학점)
		글로벌역량		
		자기관리역량		
		자원정보기술활용역량		
소양교양	6 대 핵 심 역 량	의사소통역량		영역별 1과목 필수 (4학점)
		대인관계역량		
학점		교양필수 16학점	교양선택 20학점 (보건사범계열 10학점)	

별표1-1. 교양교과목 이수표(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개정 2021.04.12.)

이수구분		이수내용	이수대상	
기초교양	기초학습역량	-2과목 4학점 필수 이수 ·TOEIC(2학점), ·창의적사고와 코딩(2학점)	2021학년도 신입생	
핵심교양	6 대 핵 심 역 량	종합적 사고역량		-4개 영역별 1과목 필수 이수 ·과목 당 2학점(8학점)
		글로벌역량		
		자기관리역량		
		자원정보기술 활용역량		
소양교양	6 대 핵 심 역 량	의사소통역량		-2개 영역 각 1과목 필수 이수 ·(4학점)
		대인관계역량		
이수학점 계		- 교양필수 16학점 - 교양선택 24학점(보건사범계열 10학점) - 계 40학점(보건사범계열 26학점)		

별표1-2. 교양교과목 이수표(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신설2022.05.02.)

이수구분		이수내용		이수대상
기초교양	기초학습역량		-2과목 4학점 필수 이수 ·대학영어(2학점) ·창의적사고와 코딩(2학점)	2022학년도 신입생
핵심교양	6 대 핵 심 역 량	종합적 사고역량	-4개 영역별 1과목 필수 이수 ·과목 당 2학점(8학점)	
		글로벌역량		
		자기관리역량		
자원정보기술 활용역량				
소양교양	의사소통역량	-2개 영역 각 1과목 필수 이수 ·(4학점)		
	대인관계역량			
이수학점 계			-교양필수 16학점 -교양선택 24학점(보건사범계열 10학점) -계 40학점(보건사범계열 26학점)	

별표1-3. 교양교과목 이수표(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신설2023.03.01.)

이수구분			이수내용		비고
			필수(학점)	선택	
기초교양	교양영역	언어소통기초	대학영어(2)	-	
		사회통합기초	응급처치이론과 실제(2)	-	
		미래발전기초	창의적사고와코딩(2)	-	
핵심교양	6대 핵심역량	종합적 사고역량	1과목 이상 선택(2학점)		
		글로벌역량	1과목 이상 선택(2학점)		
		자기관리역량	1과목 이상 선택(2학점)		
		디지털역량	1과목 이상 선택(2학점)		
		의사소통역량	1과목 이상 선택(2학점)		
		사회가치역량	1과목 이상 선택(2학점)		
이수학점 계		교양필수	6학점		
		교양선택	34학점 (보건사범계열 학과, 휴먼서비스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자유전공학과는 20학점)		
		합계	40학점(보건사범계열 학과, 휴먼서비스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자유전공학과는 26학점)		

2. 전공교과목 이수표(신설 2016.05.09)

구분	항목	이수학번	이수내용	이수학점	해당학과	비고
전공	필수	2016학년도 이후	전공기초	15학점 이상 (영역별 1과목 이상)	전학과	교원자격증 취득 시 2008학년도 이전 특수교육과 입학자 72학점 이상,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50학점(특수교육과 80학점) 이상 이수
			전공적응·진로탐색			
			융·복합			
			창의적문제중심학습			
전공	선택		산학인턴십	33학점 이상	전학과	
	2014학년도~2015학년도		전공필수(선택)를 학과 내규로 지정	48학점 이상	전학과	
	2013학년도 이전		전공으로 편성된 교과목중 자율선택	48학점 이상	전학과	
일반선택과정	복수전공	모든 학년도	복수전공학과의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36학점 이상 [교원자격증 취득시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42학점(특수교육과 72학점) 이상,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50학점(특수교육과80학점) 이상]	전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제외)	
	부전공	부전공 학과에 편성된 전공교과목		21학점 이상	전학과 (보건계열, 사범계열 학과는 제외 하되 언어치료청각학과는 포함)	
	산학연계특별전공	전공으로 편성된 모든 교과목		24학점 이상	전학과	
	일반선택	타 학과에 개설된 모든 전공 교과목		자유	전학과	
교직과정		2009학년도 이후	교직이론(14학점),교직소양(4학점),교육실습(4학점)	22학점 이상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학점 이상)	사범계학과 및 교직설치학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I, II	P/F 2회 (2017년2월 졸업자 1회)		
			교직 인성·적성 검사	적격 2회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 1회)		
졸업학점			교양+전공+일반선택+복수전공	120학점 (보건, 사범계학과 130학점)	전학과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학과에서 지정하는 전공기본이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한다.

별표1-4. 교양교과목 이수표(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신설 2024.04.01.)

이수구분		이수내용		비고
		필수(학점)	선택	
기초교양	교양영역	언어소통기초	대학영어(2)	-
		사회통합기초	응급처치이론과 실제(2)	-
		미래발전기초	창의적사고와코딩(2)	-
핵심교양	6대 핵심역량	종합적 사고역량	1과목 이상 선택(2학점)	
		글로벌역량	1과목 이상 선택(2학점)	
		자기관리역량	1과목 이상 선택(2학점)	
		디지털역량	1과목 이상 선택(2학점)	
		의사소통역량	1과목 이상 선택(2학점)	
		사회가치역량	1과목 이상 선택(2학점)	
이수학점 계		교양필수	6학점	
		교양선택	34학점 (보건사범계열 학과, 휴먼서비스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자유전공학과, 글로벌복지한국어학과, 창업평생교육학과, 사회복지빅데이터학과, 디지털보건재활학과는 20학점)	
		합계	40학점(보건사범계열 학과, 휴먼서비스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자유전공학과, 글로벌복지한국어학과, 창업평생교육학과, 사회복지빅데이터학과, 디지털보건재활학과는 26학점)	

〈별표2〉

II. 졸업이수 학점(개정 2010.02.01)(개정 2011.03.01.)(삭제 2015.04.01.)(개정 2020.01.13.)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

계열	구 분 (학과[전공])	입학년도	졸업이수학점 (이상)	최소이수학점						비고
				교양학점	자율세미나	전공이수학점	보수전공	부전공	교직이수자	
공 학	산업정보공학, *자동화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과,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인터넷응용공학과, 정보보안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해양레저장비학전공, *건축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컴퓨터응용기계전공, 전기공학과, 토목공학전공, 건축인테리어학과, 실내건축학과, *나노화학환경공학과, 화학환경공학	2003~2006	134	36	4	48이상	36	21	20	
사 범	특수교육과	2003~2006	144	36	4	48이상	42	30	20	
	기술교육과	2003~2005	134	36	4	48이상	42	30	20	
		2006	144	36	4	48이상	42	30	20	
	컴퓨터교육과	2001~2006	134	36	4	48이상	42	30	20	
	수학교육과	2005~2006	134	36	4	48이상	42	30	20	
유아교육과	2003~2006	134	36	4	48이상	42	30	20		
인문 사회	관광외국어과, *관광중국어전공, 관광영어전공, 관광일어전공, 관광경영전공, 부동산전공, 국제한국어교육전공, 관광산업과, 경영정보학과, 호텔경영학전공, 중국학과, 영어전공, 일어전공, 경영비서학전공	2003~2006	134	36	4	48이상	36	21	20	
	경찰행정학, 사이버경찰, 수사정보학전공, 여자경찰행정학과	2003~2006	134	36	4	48이상	36	21	-	
	법학과, 소방행정학, 화재조사학전공	2003~2006	134	36	4	48이상	36	21	-	
	사회복지학과	2003~2006	134	36	4	48이상	-	-	-	
보 건 (자연과학)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치료학과	2003~2006	134	36	4	48이상	-	-	20	
	*간호학과	2003~2006	134	36	4	48이상	-	-	16	
	*언어치료청각학과	2003~2006	134	36	4	48이상	-	-	20	
	안경광학과	2003~2006	134	36	4	48이상	-	-	-	
	식품영양학과, 한약재개발학과	2003~2006	134	36	4	48이상	36	21	-	
예·체능	*시각정보디자인전공, *제품·환경디자인전공, 만화애니메이션전공, 도자디자인전공, 제품환경도자디자인전공, 회화과	2003~2006	134	36	4	48이상	36	21	20	
	음악학과	2003~2006	134	36	4	48이상	36	21	-	
	실용음악학과	2003~2006	134	36	4	48이상	36	21	-	
	전통연희학과	2003~2006	134	36	4	48이상	36	21	-	
	생활체육학전공, 경호경비학과, 태권도학전공, 댄스스포츠전공, 골프경영학과, 경호·무도학과	2003~2006	134	36	4	48이상	36	21	-	

※ 자격종별이 동일한 경우 각(과)교육론 4학점 별도 이수

※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각(과)교육론 4학점+실습(2학점) 총6학점 별도 이수

※ 교직실시학과(*) 표시

■ <2007학년도 >(개정 2014.03.03)

학부(과)	구 분(전공)	입학년도	졸업 이수 학점 (이상)	최소이수학점						비고
				교양 학점	자유 세미나	전공 이수학점	복수 전공	부 전공	교직 이수자	
관광외국어학부	관광일본어, 관광영어	2000년 이전	130	36	P/F	48이상	36	21	-	
		2001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중국교류학부	국제한국어교육, 관광중국어	2000년 이전	130	36	P/F	48이상	36	21	-	
		2001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20	
관광경영학부	관광경영, 부동산	2000년 이전	130	36	P/F	48이상	36	21		
		2001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경찰학부	경찰행정학, 수사정보학, 사이버경찰학	2000년 이전	130	36	P/F	48이상	36	21		
		2001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여자경찰행정학과		2002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소방학부	소방행정학, 화재조사학	2000년 이전	130	36	P/F	48이상	36	21	-	
		2001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사회복지학과		2000년 이전	130	36	P/F	48이상	36	21	-	
		2001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디자인학부	시각정보디자인	2001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20	
	제품환경도자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									
조형문화과		2000년 이전	130	36	P/F	48이상	36	21	-	
		2001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음악학과		2000년 이전	130	36	P/F	48이상	36	21	-	
		2001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전통연희학과		2004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실용음악학과		2003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체육학부	생활체육학, 태권도, 댄스스포츠	2000년 이전	130	36	P/F	48이상	36	21	-	
		2001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경호무도학과		2000년 이전	130	36	P/F	48이상	36	21	-	
		2001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골프경영학과		2005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간호학과		2000년 이전	140	36	P/F	48이상	-	-		
		2001년 이후	144	36	4	48이상	-	-		
		2002년 이후	144	36	4	48이상	-	-	16	
물리치료학과		2000년 이전	140	36	P/F	48이상	-	-	20	
		2001년 이후	144	36	4	48이상	-	-	20	
언어치료청각학과		2000년 이전	130	36	P/F	48이상	-	-	20	
		2001년 이후	134	36	4	48이상	-	-	20	
		2003년 이후	144	36	4	48이상	-	-	20	
안경광학과		2000년 이전	130	36	P/F	48이상	-	-	-	
		2001년 이후	134	36	4	48이상	-	-	-	
작업치료학과		2002년 이후	144	36	4	48이상	-	-	20	
유아교육과		2002년 이후	134	36	4	48이상	42	30	20	
기술교육과		2005년 이전	134	36	4	48이상	42	30	20	
		2006년 이후	144	36	4	48이상	42	30	20	
컴퓨터교육과		2001년 이후	134	36	4	48이상	42	30	20	
특수교육과		2001년 이후	144	36	4	48이상	42	30	20	
수학교육과		2005년 이후	134	36	4	48이상	42	30	20	

※ (삭제 2013.03.03.)

※ 복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전공, 복수전공 각 42학점 이상 이수 하여야 함.

※ 복수전공 이수자는 승인 학부(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졸업학점 이수관련 학과 지정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교직설치학과(*) 표시

■ 2008학년도 이후 입학생 (개정2011.03.01)(개정 2012.03.01)(개정 2013.03.04)(개정 2014.03.03)

대학, 학부	구 분(학과, 전공)	입학년도	졸업 이수 학점 (이상)	최소이수학점						비고
				교양 학점	자율 세미나	전공 이수학점	복수 전공	부 전공	교직이 수자	
관광외국어학부	관광일본어, 관광영어, 이동영어교육	2000년 이전	130	36	P/F	48이상	36	21	-	
		2001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중국교류학부, 한중교류대학	국제한국어교육, 컴퓨터응용기술 관광중국어, 관광영어학, 경영한국어학, 음악학, 관광한국어학, 만화애니메이션학, 시각디자인학, 제품디자인학	2000년 이전	130	36	P/F	48이상	36	21	-	
		2001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42)	21	20	
		2002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42)	21(30)	20	
		2009년 이후	134	36	4	48(50)이상	36(50)	21(-)	22	
관광경영학부	관광경영(경영학), 부동산, 경영정보	2000년 이전	130	36	P/F	48이상	36	21		
		2001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경찰학부	경찰행정, 수사정보학, 사이버경찰학, 경찰수사학	2000년 이전	130	36	P/F	48이상	36	21		
		2001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여자경찰행정학과		2002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소방대학	소방행정, 화재조사, 소방안전교육, 소방산업	2000년 이전	130	36	P/F	48이상	36	21	-	
		2001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사회복지학과, 복지상담학과		2000년 이전	130	36	P/F	48이상	36	21	-	
		2001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인문사회대학	복지상담학, 이동영어 학, 소방행정학	2009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융합기술학부(해양레저, 나노소재, IT전공)		2008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해양레저선박학과, 레저산업정보학		2009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디자인학부	시각정보디자인	2001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제품환경도자디자인		134	36	4	48이상	36	21		
	만화애니메이션		134	36	4	48이상	36	21	-	
*디자인학과 디자인학부(*디자인전공, 인테리어디자인전공)		2008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20	
		2009년 이후	134	36	4	48(50)이상	36(50)	21(-)	22	
조형문화과		2000년 이전	130	36	P/F	48이상	36	21	-	
		2001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음악학		2000년 이전	130	36	P/F	48이상	36	21	-	
		2001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음악·뮤지컬학과, 뮤지컬학과		2009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전통연희학과		2004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실용음악(실용음악전공)		2003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대학, 학부	구 분(학과, 전공)	입학년도	졸업 이수 학점 (이상)	최소이수학점						비고
				교양 학점	자율 세미나	전공 이수학점	복수 전공	부 전공	교직 이수자	
체육학부	생활체육, 태권도, 댄스스포츠, 바둑학	2000년 이전	130	36	P/F	48이상	36	21	-	
		2001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경호·무도학과		2000년 이전	130	36	P/F	48이상	36	21	-	
		2001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경호무도비석학, 경호무도학부 (경호학, 무도학, 특공무술전공)		2008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골프경영		2005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해양레저스포츠학과, 레저스포츠학		2009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	
*간호학과		2000년 이전	140	36	P/F	48이상	-	-		
		2001년 이후	144	36	4	48이상	-	-		
		2002년 이후	144	36	4	48이상	-	-	16	
		2009년 이후	144	36	4	48(-) 이상	-(-)	-(-)	22	
물리치료학과		2000년 이전	140	36	P/F	48이상	-	-	20	
		2001년 이후	144	36	4	48이상	-	-	-	
언어치료청각학과		2000년 이전	130	36	P/F	48이상	36	21	20	
		2001년 이후	134	36	4	48이상	36	21	20	
		2003년 이후	144	36	4	48이상	36	21	-	
안경광학과		2000년 이전	130	36	P/F	48이상	-	-	-	
		2001년 이후	134	36	4	48이상	-	-	-	
		2012년 이후	144	36	4	48이상	-	-	-	
작업치료학과		2002년 이후	144	36	4	48이상	-	-	-	
유아교육과		2002년 이후	134	36	4	48이상	42	30	20	
		2009년 이후	144	36	4	50이상	50	-	22	
기술교육과		2005년 이전	134	36	4	48이상	42	30	20	
		2006년 이후	144	36	4	48이상	42	30	20	
		2009년 이후	144	36	4	50이상	50	-	22	
		2012년 이후	144	36	4	50이상	50	-	22	
컴퓨터교육과		2001년 이후	134	36	4	48이상	42	30	20	
		2009년 이후	134	36	4	50이상	50	-	22	
특수교육과		2001년 이후	144	36	4	48이상	42	30	20	
		2009년 이후	144	36	4	80이상	80	-	22	
수학교육과		2005년 이후	134	36	4	48이상	42	30	20	
		2009년 이후	144	36	4	50이상	50	-	22	
영어교육과		2009년 이후	144	36	4	50이상	50		22	

※ (삭제 2013.03.03.)

※ 복수전공 이수자는 승인 학부(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학과 지정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복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전공, 복수전공 각 42학점 이상 이수 하여야 함.(단, 2009 학년도 입학자부터 50학점이상(특수교육과 80학점이상)이수)

※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부전공 이수 불가.

※ 교직설치학과 중 교직이수자는 ()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교직설치학과(*) 표시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신설 2012.03.01.)(개정 2014.03.03.)

대학, 학부	구 분(학과, 전공)	입학년도	졸업 이수 학점 (이상)	최소이수학점					비고
				교양 학점	전공 이수학점	복수 전공	부 전공	교직 과정	
	관광외국어학과	2013년 이후	120	25	48	36	21	-	
한중어세안대학	관광중국어학과* 국제한국어교육학과 관광한국어학과 국제비서학과 사무자동화학과 국제실용음악학과 예술경영학과, 뷰티미용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제과제빵학과 매스미디어예술학과	2013년 이후	120	25	48(50)	36(50)	21(-)	22	
	중국학과*	2013년 이후	120	25	48(50)	36(50)	21(-)	22	
	경영학과	2013년 이후	120	25	48	36	21	-	
	사회복지상담학과	2013년 이후	120	25	48	36	21	-	
	아동보육상담학과	2013년 이후	120	25	48	36	21	-	
	경찰행정학과	2013년 이후	120	25	48	36	21	-	
	교정보호학과	2013년 이후	120	25	48	36	21	-	
	소방행정학과	2013년 이후	120	25	48	36	21	-	
	실용음악학과	2013년 이후	120	25	48	36	21	-	
	뮤지컬학과	2013년 이후	120	25	48	36	21	-	
	음악학과	2013년 이후	120	25	48	36	21	-	
	전통연희학과	2013년 이후	120	25	48	36	21	-	
	방송영화학과	2013년 이후	120	25	48	36	21	-	
	디자인학과*	2013년 이후	120	25	48(50)	36(50)	21(-)	22	
	만화애니메이션학과	2013년 이후	120	25	48	36	21	-	
	조형문화과	2013년 이후	120	25	48	36	21	-	
체육학부	생활체육학 태권도학, 바둑학	2013년 이후	120	25	48	36	21	-	
	경호무도비서학과	2013년 이후	120	25	48	36	21	-	
	골프경영학과	2013년 이후	120	25	48	36	21	-	
	해양레저학과	2013년 이후	120	25	48	36	21	-	
	정보물류학과	2013년 이후	120	25	48	36	21	-	
	해양레저장비학과	2013년 이후	120	25	48	36	21	-	
	물리치료학과	2013년 이후	130	25	48	-	-	-	
	간호학과*	2013년 이후	130	25	48(50)	-(-)	-(-)	22	
	언어치료청각학과	2013년 이후	130	25	48	36	21	-	
	안경광학과	2013년 이후	130	25	48	-	-	-	
	작업치료학과	2013년 이후	130	25	48	-	-	-	
	기술교육과	2013년 이후	130	25	50	50	-	22	
	컴퓨터교육과	2013년 이후	130	25	50	50	-	22	
	특수교육과	2013년 이후	130	25	80	80	-	22	
	유아교육과	2013년 이후	130	25	50	50	-	22	
	수학교육과	2013년 이후	130	25	50	50	-	22	
	영어교육과	2013년 이후	130	25	50	50	-	22	

※ 학과 지정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복수전공 이수자는 승인 학부(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교직설치학과 중 교직이수자는 ()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교직설치학과(*) 표시

※ 2013학년도이전 신입학생이 “0”학점으로 개설된 자율세미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졸업이수학점 산정시 과목당 1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2013학년도 내지 2014학년도 신입학생은 개설교과목 학점을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16.11.01.)

■ 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신설2015.04.01.)(개정2018.06.05.)

학 과	입학년도	졸업이수 학점(이상)	최소이수학점						교직 과정	비고
			교양 학점	단일 전공 이수학점	부전공·복수전공 이수학점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글로벌비즈니스학과	2015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경영학과	2015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사회복지상담학과	2015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경찰행정학과	2015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교정보호학과	2015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소방행정학과	2015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항공서비스학과	2015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실용음악학과	2015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뮤지컬학과	2015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전통연희학과	2015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방송영화학과	2015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디자인학과*	2015년 이후	120	36	48(50)	36(50)	36(50)	21	22		
만화애니메이션학과	2015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공간문화콘텐츠학과	2015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생활체육학과	2015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태권도학과	2015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해양레저학과	2015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정보물류학과	2015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해양레저장비학과	2015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물리치료학과	2015년 이후	130	25	48	-	-	-	-		
간호학과*	2015년 이후	130	25	48(50)	-	-	-	22		
언어치료청각학과	2015년 이후	130	25	48	36	36	21	-		
작업치료학과	2015년 이후	130	25	48	-	-	-	-		
기술교육과	2015년 이후	130	25	50	50	50	-	22		
특수교육과	2015년 이후	130	25	80	80	80	-	22		
유아교육과	2015년 이후	130	25	50	50	50	-	22		
수학교육과	2015년 이후	130	25	50	50	50	-	22		
영어교육과	2015년 이후	130	25	50	50	50	-	22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신설2016.05.09.)(개정2018.06.05.)

학 과	입학년도	졸업이수 학점(이상)	최소이수학점						교직 과정	비고
			교양 학점	단일전 공	복수전공·부전공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글로벌비즈니스학과	2016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복지경영학과	2016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사회복지상담학과	2016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경찰행정학과	2016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교정보호학과	2016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소방행정학과	2016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항공서비스학과	2016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실용음악학과	2016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뮤지컬학과	2016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전통연희학과	2016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방송영화학과	2016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디자인학과	2016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만화애니메이션학과	2016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공간문화콘텐츠학과	2016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생활체육학과	2016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태권도학과	2016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해양레저학과	2016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정보물류학과	2016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융합보안학과	2016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방재안전학과	2016년 이후	120	36	48	36	36	21	-		
물리치료학과	2016년 이후	130	25	48	-	-	-	-		
간호학과	2016년 이후	130	25	48	-	-	-	-		
언어치료청각학과	2016년 이후	130	25	48	36	36	21	-		
작업치료학과	2016년 이후	130	25	48	-	-	-	-		
기술교육과	2016년 이후	130	25	50	50	50	-	22		
특수교육과	2016년 이후	130	25	80	80	80	-	22		
유아교육과	2016년 이후	130	25	80	50	50	-	22		
수학교육과	2016년 이후	130	25	50	50	50	-	22		
영어교육과	2016년 이후	130	25	50	50	50	-	22		

■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신설2018.06.05.)

학 과	입학년도	졸업이수 학점(이상)	최소이수학점								비고
			교양			단일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과정	
			필수	선택	계		주전공	복수전 공	부전공		
경영학부(경영학전공, 경영한국어전공)	2017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사회복지상담학과	2017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경찰행정학과	2017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소방행정학과	2017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항공서비스학과	2017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항공운항학과	2017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항공정비학과	2017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항공교통물류학과	2017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실용음악학부(보컬전 공,기악전공,작곡전공, 뮤지컬(방송연기)전공)	2017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전통연희학과	2017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디자인학과	2017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만화애니메이션학과	2017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피아노학과	2017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생활체육학과	2017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태권도학과	2017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해양레저학과	2017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물리치료학과	2017년 이후	130	16	10	26	48	-	-	-	-	
간호학과	2017년 이후	130	16	10	26	48	-	-	-	-	
언어치료청각학과	2017년 이후	130	16	10	26	48	36	36	21	-	
작업치료학과	2017년 이후	130	16	10	26	48	-	-	-	-	
기술교육과	2017년 이후	130	16	10	26	50	50	50	-	22	
특수교육과	2017년 이후	130	16	10	26	80	80	80	-	22	
유아교육과	2017년 이후	130	16	10	26	50	50	50	-	22	
수학교육과	2017년 이후	130	16	10	26	50	50	50	-	22	
영어교육과	2017년 이후	130	16	10	26	50	50	50	-	22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신설 2018.06.05.)

학 과	입학년도	졸업이수 학점(이상)	최소이수학점								비고
			교양			단일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과정	
			필수	선택	계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경영학부(경영학전공,경영한국어전공)	2018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사회복지상담학과	2018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경찰행정학과	2018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소방행정학과	2018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항공서비스학과	2018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항공운항학과	2018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항공정비학과	2018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항공교통물류학과	2018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실용음악학부(보컬전공,기악전공,작곡전공,뮤지컬(방송연기)전공)	2018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전통연희학과	2018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디자인학과	2018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만화애니메이션학과	2018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생활체육학과	2018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피아노학과	2018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태권도학과	2018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해양레저학과	2018년 이후	120	16	20	36	48	36	36	21	-	
물리치료학과	2018년 이후	130	16	10	26	48	-	-	-	-	
간호학과	2018년 이후	130	16	10	26	48	-	-	-	-	
언어치료청각학과	2018년 이후	130	16	10	26	48	36	36	21	-	
작업치료학과	2018년 이후	130	16	10	26	48	-	-	-	-	
기술교육과	2018년 이후	130	16	10	26	50	50	50	-	22	
특수교육과	2018년 이후	130	16	10	26	80	80	80	-	22	
유아교육과	2018년 이후	130	16	10	26	50	50	50	-	22	

■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신설 2020.01.13.)

학 과	입학년도	졸업이수 학점 (이상)	최소이수학점							비고
			교양		단일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과정	
			필수	선택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휴먼서비스융합학부(사회복지 상담전공, 경영학전공)	2019년 이후	120	16	20	48	36	36	21	-	
경찰행정학과	2019년 이후	120	16	20	48	36	36	21	-	
소방행정학과	2019년 이후	120	16	20	48	36	36	21	-	
항공서비스학과	2019년 이후	120	16	20	48	36	36	21	-	
항공운항학과	2019년 이후	120	16	20	48	36	36	21	-	
항공정비학과	2019년 이후	120	16	20	48	36	36	21	-	
항공교통물류학과	2019년 이후	120	16	20	48	36	36	21	-	
항공ICT융합학과	2019년 이후	120	16	20	48	36	36	21	-	
실용음악학과	2019년 이후	120	16	20	48	36	36	21	-	
전통연희학과	2019년 이후	120	16	20	48	36	36	21	-	
디자인학과	2019년 이후	120	16	20	48	36	36	21	-	
만화애니메이션학과	2019년 이후	120	16	20	48	36	36	21	-	
생활체육학과	2019년 이후	120	16	20	48	36	36	21	-	
피아노학과	2019년 이후	120	16	20	48	36	36	21	-	
태권도학과	2019년 이후	120	16	20	48	36	36	21	-	
해양레저학과	2019년 이후	120	16	20	48	36	36	21	-	
간호학과	2019년 이후	130	16	10	48	-	-	-	-	
물리치료학과	2019년 이후	130	16	10	48	-	-	-	-	
언어치료학과	2019년 이후	130	16	10	48	36	36	21	-	
작업치료학과	2019년 이후	130	16	10	48	-	-	-	-	
기술교육과	2019년 이후	130	16	10	50	50	50	-	22	
특수교육과	2019년 이후	130	16	10	80	80	80	-	22	
유아교육과	2019년 이후	130	16	10	50	50	50	-	22	

■ 2020학년도 입학생(신설 2020.01.13.)

학 과	입학년도	졸업이수 학점 (이상)	최소이수학점							비고
			교양		단일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과정	
			필수	선택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기술교육과	2020학년도이후	130	16	10	50	50	50	-	22	
특수교육과	“	130	16	10	80	80	80	-	22	
유아교육과	“	130	16	10	50	50	50	-	22	
간호학과	“	130	16	10	48	-	-	-	-	
물리치료학과	“	130	16	10	48	-	-	-	-	
작업치료학과	“	130	16	10	48	-	-	-	-	
휴먼서비스융합학과(사회복지 상담전공, 경영학전공)	“	120	16	20	48	36	36	21	-	
스포츠건강관리학과	“	120	16	20	-	36	36	21	-	
태권도학과	“	120	16	20	-	36	36	21	-	
항공서비스학과	“	120	16	20	-	36	36	21	-	
항공운항학과	“	120	16	20	48	36	36	21	-	
항공정비학과	“	120	16	20	48	36	36	21	-	
항공해양물류학과	“	120	16	20	-	36	36	21	-	
항공교통관리학과	“	120	16	20	-	36	36	21	-	
경찰행정학과	“	120	16	20	-	36	36	21	-	
소방행정학과	“	120	16	20	-	36	36	21	-	
스포츠레저산업학과	“	120	16	20	-	36	36	21	-	
실용음악학과	“	120	16	20	-	36	36	21	-	
디자인학과	“	120	16	20	-	36	36	21	-	
만화애니메이션학과	“	120	16	20	-	36	36	21	-	
전통연희학과	“	120	16	20	-	36	36	21	-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의무이수대상학과 : 전학과. 다만 기술교육과,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휴먼서비스융합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는 제외

■ 2021학년도 입학생(신설 2021.03.01.)(개정2023.03.17.)

학 과	입학년도	졸업이수 학점 (이상)	최소이수학점							비고
			교양		단일전공	복수전공 · 부전공			교직 과정	
			필수	선택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기술교육과	2021학년도이후	130	16	10	50	50	50	-	22	
특수교육과	“	130	16	10	80	80	80	-	22	
유아교육과	“	130	16	10	50	50	50	-	22	
간호학과	“	130	16	10	48	-	-	-	-	
물리치료학과	“	130	16	10	48	-	-	-	-	
휴먼서비스학과(사회복지상담 전공, 경영학전공)	“	120	16	24	48	36	36	21	-	
스포츠건강관리학과	“	120	16	24	-	36	36	21	-	
태권도학과	“	120	16	24	-	36	36	21	-	
항공서비스학과	“	120	16	24	-	36	36	21	-	
항공운항학과	“	120	16	24	48	36	36	21	-	
항공정비학과	“	120	16	24	48	36	36	21	-	
항공물류학과	“	120	16	24	-	36	36	21	-	
항공교통관리학과	“	120	16	24	-	36	36	21	-	
경찰행정학과	“	120	16	24	-	36	36	21	-	
소방행정학과	“	120	16	24	-	36	36	21	-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	“	120	16	24	-	36	36	21	-	
스포츠레저산업학과	“	120	16	24	-	36	36	21	-	
실용음악학과	“	120	16	24	-	36	36	21	-	
디자인학과	“	120	16	24	-	36	36	21	-	
만화애니메이션학과	“	120	16	24	-	36	36	21	-	
전통연희학과	“	120	16	24	-	36	36	21	-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의무이수대상학과 : 전학과. 다만 기술교육과,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휴먼서비스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는 제외

■ 2022학년도 입학생(신설2022.05.02.)(개정2023.03.17.)

학 과	입학년도	졸업이수 학점 (이상)	최소이수학점							비고
			교양		단일전공	복수전공 · 부전공			교직 과정	
			필수	선택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기술교육과	2022학년도 이후	130	16	10	50	50	50	-	22	
특수교육과	“	130	16	10	80	80	80	-	22	
유아교육과	“	130	16	10	50	50	50	-	22	
간호학과	“	130	16	10	48	-	-	-	-	
물리치료학과	“	130	16	10	48	-	-	-	-	
휴먼서비스학과(사회복지상담 전공, 경영학전공)	“	120	16	24	48	36	36	21	-	
스포츠건강관리학과	“	120	16	24	-	36	36	21	-	
태권도학과	“	120	16	24	-	36	36	21	-	
항공서비스학과	“	120	16	24	-	36	36	21	-	
항공운항학과	“	120	16	24	48	36	36	21	-	
항공정비학과	“	120	16	24	48	36	36	21	-	
항공물류학과	“	120	16	24	-	36	36	21	-	
항공교통관리학과	“	120	16	24	-	36	36	21	-	
경찰행정학과	“	120	16	24	-	36	36	21	-	
소방행정학과	“	120	16	24	-	36	36	21	-	
인공지능빅데이터학과	“	120	16	24	-	36	36	21	-	
스포츠레저산업학과	“	120	16	24	-	36	36	21	-	
실용음악학과	“	120	16	24	-	36	36	21	-	
디자인학과	“	120	16	24	-	36	36	21	-	
만화애니메이션학과	“	120	16	24	-	36	36	21	-	
전통연희학과	“	120	16	24	-	36	36	21	-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의무이수대상학과 : 전학과. 다만 기술교육과,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휴먼서비스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는 제외

■ 2023학년도 입학생(신설 2023.03.01.)

학 과	입학년도	졸업이수 학점 (이상)	최소이수학점							교직 과정	비고
			교양		단일전공	복수전공 · 부전공					
			필수	선택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기술교육과	2023학년도 이후	130	6	20	50	50	50	-	22		
특수교육과	“	130	6	20	80	80	80	-	22		
유아교육과	“	130	6	20	50	50	50	-	22		
간호학과	“	130	6	20	48	-	-	-	-		
물리치료학과	“	130	6	20	48	-	-	-	-		
휴먼서비스학과	“	120	6	20	48	36	36	21	-		
사회복지상담학과	“	120	6	20	48	36	36	21	-		
자유전공학과	“	120	6	20	48	36	36	21	-		
스포츠건강관리학과	“	120	6	34	-	36	36	21	-		
태권도학과	“	120	6	34	-	36	36	21	-		
항공서비스학과	“	120	6	34	-	36	36	21	-		
항공운항학과	“	120	6	34	48	36	36	21	-		
항공정비학과	“	120	6	34	48	36	36	21	-		
인공지능빅데이터학과	“	120	6	34	-	36	36	21	-		
AI콘텐츠디자인학과	“	120	6	34	-	36	36	21	-		
웹툰애니메이션학과	“	120	6	34	-	36	36	21	-		
경찰행정학과	“	120	6	34	-	36	36	21	-		
스포츠레저산업학과	“	120	6	34	-	36	36	21	-		
전통연희학과	“	120	6	34	-	36	36	21	-		
반려동물관리학과	“	120	6	34	-	36	36	21	-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의무이수대상학과 : 전학과. 다만 기술교육과,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휴먼서비스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자유전공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는 제외

■ 2024학년도 이후 입학생(신설 2024.04.01.)

학 과	입학년도	졸업이수 학점 (이상)	최소이수학점							교직 과정	비고
			교양		단일전공	복수전공 · 부전공					
			필수	선택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기술교육과	2024학년도 이후	130	6	20	50	50	50	-	22		
특수교육과	“	130	6	20	80	80	80	-	22		
유아교육과	“	130	6	20	50	50	50	-	22		
간호학과	“	130	6	20	48	-	-	-	-		
물리치료학과	“	130	6	20	48	-	-	-	-		
휴먼서비스학과	“	120	6	20	48	36	36	21	-		
사회복지상담학과	“	120	6	20	48	36	36	21	-		
자유전공학과	“	120	6	20	48	36	36	21	-		
스포츠건강관리학과	“	120	6	34	-	36	36	21	-		
태권도학과	“	120	6	34	-	36	36	21	-		
항공서비스학과	“	120	6	34	-	36	36	21	-		
항공운항학과	“	120	6	34	48	36	36	21	-		
항공정비학과	“	120	6	34	48	36	36	21	-		
인공지능빅데이터학과	“	120	6	34	-	36	36	21	-		
AI콘텐츠디자인학과	“	120	6	34	-	36	36	21	-		
웹툰애니메이션학과	“	120	6	34	-	36	36	21	-		
경찰행정학과	“	120	6	34	-	36	36	21	-		
스포츠레저산업학과	“	120	6	34	-	36	36	21	-		
전통연희학과	“	120	6	34	-	36	36	21	-		
반려동물관리학과	“	120	6	34	-	36	36	21	-		
글로벌복지한국어학과	“	120	6	20	48	36	36	21	-		
창업평생교육학과	“	120	6	20	48	36	36	21	-		
사회복지빅데이터학과	“	120	6	20	48	36	36	21	-		
디지털보건재활학과	“	120	6	20	48	36	36	21	-		

※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의무이수대상학과 : 전학과. 다만 기술교육과,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휴먼서비스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자유전공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글로벌복지한국어학과, 창업평생교육학과, 사회복지빅데이터학과, 디지털보건재활학과는 제외

<별표3>

실 점 환 산 표 [= 60 + (X-1) × 40 / 3.5]

등급	평점	백분율	등급	평점	백분율	등급	평점	백분율	등급	평점	백분율	등급	평점	백분율	등급	평점	백분율
A+	4.5	100	A	3.99	94.17	B+	3.49	88.46	C+	2.99	82.74	C	2.49	77.03	D+	1.99	71.31
	4.49	99.89		3.98	94.06		3.48	88.34		2.98	82.63		2.48	76.91		1.98	71.20
	4.48	99.77		3.97	93.94		3.47	88.23		2.97	82.51		2.47	76.80		1.97	71.09
	4.47	99.66		3.96	93.83		3.46	88.11		2.96	82.40		2.46	76.69		1.96	70.97
	4.46	99.54		3.95	93.71		3.45	88.00		2.95	82.29		2.45	76.57		1.95	70.86
	4.45	99.43		3.94	93.60		3.44	87.89		2.94	82.17		2.44	76.46		1.94	70.74
	4.44	99.31		3.93	93.49		3.43	87.77		2.93	82.06		2.43	76.34		1.93	70.63
	4.43	99.20		3.92	93.37		3.42	87.66		2.92	81.94		2.42	76.23		1.92	70.51
	4.42	99.09		3.91	93.26		3.41	87.54		2.91	81.83		2.41	76.11		1.91	70.40
	4.41	98.97		3.9	93.14		3.4	87.43		2.9	81.71		2.4	76.00		1.9	70.29
	4.4	98.86		3.89	93.03		3.39	87.31		2.89	81.60		2.39	75.89		1.89	70.17
	4.39	98.74		3.88	92.91		3.38	87.20		2.88	81.49		2.38	75.77		1.88	70.06
	4.38	98.63		3.87	92.80		3.37	87.09		2.87	81.37		2.37	75.66		1.87	69.94
	4.37	98.51		3.86	92.69		3.36	86.97		2.86	81.26		2.36	75.54		1.86	69.83
	4.36	98.40		3.85	92.57		3.35	86.86		2.85	81.14		2.35	75.43		1.85	69.71
	4.35	98.29		3.84	92.46		3.34	86.74		2.84	81.03		2.34	75.31		1.84	69.60
	4.34	98.17		3.83	92.34		3.33	86.63		2.83	80.91		2.33	75.20		1.83	69.49
	4.33	98.06		3.82	92.23		3.32	86.51		2.82	80.80		2.32	75.09		1.82	69.37
	4.32	97.94		3.81	92.11		3.31	86.40		2.81	80.69		2.31	74.97		1.81	69.26
	4.31	97.83		3.8	92.00		3.3	86.29		2.8	80.57		2.3	74.86		1.8	69.14
	4.3	97.71		3.79	91.89		3.29	86.17		2.79	80.46		2.29	74.74		1.79	69.03
	4.29	97.60		3.78	91.77		3.28	86.06		2.78	80.34		2.28	74.63		1.78	68.91
	4.28	97.49		3.77	91.66		3.27	85.94		2.77	80.23		2.27	74.51		1.77	68.80
	4.27	97.37		3.76	91.54		3.26	85.83		2.76	80.11		2.26	74.40		1.76	68.69
	4.26	97.26		3.75	91.43		3.25	85.71		2.75	80.00		2.25	74.29		1.75	68.57
	4.25	97.14		3.74	91.31		3.24	85.60		2.74	79.89		2.24	74.17		1.74	68.46
	4.24	97.03		3.73	91.20		3.23	85.49		2.73	79.77		2.23	74.06		1.73	68.34
	4.23	96.91		3.72	91.09		3.22	85.37		2.72	79.66		2.22	73.94		1.72	68.23
	4.22	96.80		3.71	90.97		3.21	85.26		2.71	79.54		2.21	73.83		1.71	68.11
	4.21	96.69		3.7	90.86		3.2	85.14		2.7	79.43		2.2	73.71		1.7	68.00
	4.2	96.57		3.69	90.74		3.19	85.03		2.69	79.31		2.19	73.60		1.69	67.89
	4.19	96.46		3.68	90.63		3.18	84.91		2.68	79.20		2.18	73.49		1.68	67.77
	4.18	96.34		3.67	90.51		3.17	84.80		2.67	79.09		2.17	73.37		1.67	67.66
	4.17	96.23		3.66	90.40		3.16	84.69		2.66	78.97		2.16	73.26		1.66	67.54
	4.16	96.11		3.65	90.29		3.15	84.57		2.65	78.86		2.15	73.14		1.65	67.43
	4.15	96.00		3.64	90.17		3.14	84.46		2.64	78.74		2.14	73.03		1.64	67.31
	4.14	95.89		3.63	90.06		3.13	84.34		2.63	78.63		2.13	72.91		1.63	67.20
	4.13	95.77		3.62	89.94		3.12	84.23		2.62	78.51		2.12	72.80		1.62	67.09
	4.12	95.66		3.61	89.83		3.11	84.11		2.61	78.40		2.11	72.69		1.61	66.97
	4.11	95.54		3.6	89.71		3.1	84.00		2.6	78.29		2.1	72.57		1.6	66.86
4.1	95.43	3.59	89.60	3.09	83.89	2.59	78.17	2.09	72.46	1.59	66.74						
4.09	95.31	3.58	89.49	3.08	83.77	2.58	78.06	2.08	72.34	1.58	66.63						
4.08	95.20	3.57	89.37	3.07	83.66	2.57	77.94	2.07	72.23	1.57	66.51						
4.07	95.09	3.56	89.26	3.06	83.54	2.56	77.83	2.06	72.11	1.56	66.40						
4.06	94.97	3.55	89.14	3.05	83.43	2.55	77.71	2.05	72.00	1.55	66.29						
4.05	94.86	3.54	89.03	3.04	83.31	2.54	77.60	2.04	71.89	1.54	66.17						
4.04	94.74	3.53	88.91	3.03	83.20	2.53	77.49	2.03	71.77	1.53	66.06						
4.03	94.63	3.52	88.80	3.02	83.09	2.52	77.37	2.02	71.66	1.52	65.94						
4.02	94.51	3.51	88.69	3.01	82.97	2.51	77.26	2.01	71.54	1.51	65.83						
4.01	94.40	3.5	88.57	3.0	82.86	2.5	77.14	2.0	71.43	1.5	65.71						
4.0	94.29														F	1.0미만	59.00

(서식 I)

강 의 계 획 서

----- (양 식 생 략) -----

전과 지원 신청서

소 속	학과(전공)		학년
학 번		성 명	①
주·야구분		성적(평점평균)	
연락처		구분 (해당된 부분에 ○표 할것)	재학생 · 복학생 · 편입학생

※ 학과(부), 전공 및 주야구분을 정확히 표기할 것

구 분	전입 학과(부)·전공	주·야 구분	전과(부)할 학년/ 학기
전과(부)	학 과 (부) 전공		학년 학기

지 원 자 격

- 전과는 전 학과 가능합니다.
다만 사범계열 학과는 입학정원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입학정원 내 여석이 있을 경우만 가능)할 수 없다.
- 전과한 경우 장학금지급규정 제10조(신청자 자격제한)에 의거 한 학기를 경과한 후 장학금을 신
청할 수 있다.

첨 부 서 류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세 한 대 학 교 교 무 입 학 처 장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5.04.01.)(개정2019.05.28.)

복수전공 · 부전공 포기 신청서

소속 학부 (과)	지도교수	학부(과)장

소 속 학 부(과)				
학부(과)	학 번	학년	성 명	연 락 처
				자 택:
				H·P:
복수전공 · 부전공 포기 내역				
구 분	신청일자	학부(과) · 전공		비 고
복수전공				
부 전 공				

위와 같이 복수전공 · 부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결 재	담당	계장	과장	부처장	처장

세 한 대 학 교 교 무 입 학 처 장 귀 하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5.04.01.)(개정2019.05.28.)

조기졸업 신청서

소 속					
학부(과)	학 번	학년	성 명	연 락 처	
				자 택	
				휴대전화	
취 득 학 점 내 역					
년도/학기	취득학점	평점평균	년도/학기	취득학점	평점평균

상기 본인은 학사규정 제10장 조기졸업 규정에 의거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덧붙임 : 성적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인)

결 재	담당	계장	과장	부처장	처장

세 한 대 학 교 교 무 입 학 처 장 귀 하

<별지 제6호 서식>(삭제 2015.04.01.)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5.04.01.)(개정2019.05.28.)(개정2024.04.01.)

휴 학 원

소속 학부 (과)	지도교수	학부(과)장

결 재	담당	계장	과장	부처장	처장

학부(과)	전공			학년
학 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일반특별) 휴학	휴학일자	휴학사유		
군 휴 학	입대일자	전역예정일자		
주 소	e-mail			
연 락 처	자 택	휴대전화		

위와 같이 휴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비서류 : 일반휴학자- 사유서 및 지도교수 면담 확인서 1부, 서약서 1부.
질병휴학자- 사유서 및 지도교수 면담 확인서 1부, 서약서 1부.
진단서(4주이상) 1부.

군휴학자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서약서 1부.

대출도서	등 록

※ 주의 사항

1. 전공배정이 확정되지 않은 자는 학기제 복학이 불가능합니다.
2.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기 전 학기제 복학자는 교직이수가 불가능합니다.
3. 삭제
4. 도서미납자는 반드시 도서관 대출 담당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뒷면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6. 등록금을 납부하고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본 대학교 규정에 의거 처리됨.
(개시일=전액, 개시 다음날~30일=수업료의 5/6, 31일~60일=수업료의 2/3,
61~90일=수업료의 1/2, 91일이후=반환하지 않음)
7. 외국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제교류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인 (인)
보호자 (인)

세 한 대 학 교 교 무 입 학 처 장 귀 하

-----절-----취-----선-----

※ 일반휴학자중 군휴학 변경시 입영통지서를 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하고 전화요망.	휴학원 접수증	
	학번	
영암캠퍼스 FAX	061-469-1409	휴학원을 접수하였음 확인함. 담당자 (인)
당진캠퍼스 FAX	041-359-6064	

사 유 서

작성자 _____ 인

면담확인서 (면담사항기록)

지도교수 _____ 인

서 약 서

1. 일반(질병)휴학자는 휴학기간 6개월(한학기) 또는 1년(두학기) 이내의 복학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2. 일반(질병)휴학기간중에 입영통지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입대일자 기록된 것)를 교무입학처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군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6개월(한학기) 또는 1년 이내(두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의 복학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4. 군입대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귀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 교무입학처에 신고하여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군복무중 복무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되는 경우에는 교무입학처에 복무기간 및 복학예정 연도·학기를 신고하여야 한다.
 6. 전역예정자가 복학을 원할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7. 전역예정자가 전역휴가로 인해 사실상 4분의3이상의 출석 수업이 가능할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추천서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다.(전역휴가시 반드시 휴가증 사본을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일반(군)휴학기간중 휴학원에 기재한 주소지(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학사인트라 신상정보수정 프로그램에서 본인이 직접 정정하여야 한다.
 9.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군입대하여 귀향조치 받았을 경우 군휴학을 취소하고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학부(과)은 교무입학처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 시험을 과한다.
 10. 등록 후 휴학하고 정해진 복학기간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납부된 등록금이 자동소멸 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11. 역(학기제) 복학자의 7학기 차 성적은 성적장학 대상에서 제외한다.
 12. 교직이수 신청자와 전공배정이 확정되지 않은 자는 역(학기제)복학이 불가능하다.
※ 역(학기제) 복학 : 휴학당시 학년 학기에 맞추지 않고, 복학하는 제도
(예)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경우 2학기로 복학하지 않고 다시 1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 상기 내용 불이행으로 인한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성 명

(인)

자 퇴 원

소속 학부 (과)	지도교수	학부(과)장	결 재	담당	계장	과장	부처장	처장

학부(과)		전공		학년		
학 번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입학 년도	년 월 일(신입학, 편입학)					
주 소						
연 락 처	자 택	휴대전 화				

본인은 위와 같이 보호자 연서로 자퇴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사유 및 지도교수 면담확인서 1부.
보호자인감증명 1부
등록금 환불 신청서(해당자)

경우	대출도서	등록	국제교류원

1. 학생은 대출도서 반납여부와 등록사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2.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제교류원을 경유(신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본 인 (인)

보호자 (인)

세 한 대 학 교 교 무 입 학 처 장 귀 하

-----절-----취-----선-----

<유의사항> ※ 등록금을 납부하고 자퇴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 규정은 다음표와 같다.		자퇴원 접수증	
자퇴일(휴학 중 자퇴자는 최초 휴학일)	반환금액	학 번	자퇴원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함.
개시일 까지	납부금액의 100%	이 름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까지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 과전 까지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 과전 까지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금액 없음		

사 유 서

Blank area for the '사유서' (Statement of Reasons) section.

작성자 _____ 인

면담확인서(면담사항기록)

Blank area for the '면담확인서(면담사항기록)' (Interview Confirmation/Record) section.

지도교수 _____ 인

학 위 취 득 유 예 신 청 서

소속 학부 (과)	지도교수	학부(과)장

소 속				
학 과(부)	학 번	학 년	성 명	연 락 처
				자 택
				휴대전화
신 청 사 유				
신청사유(해당란에 표기)	전 공 명	미 이수사유	졸업예정년/월	비 고
()복수·부전공 미 이수				
()교직과정 미 이수				

상기 본인은 학사규정 제70조에 의거 학적취득 유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덧붙임 : 성적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유	국제교류원

※외국인 학생은 반드시 국제교류원을 경유(신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재	담당	계장	과 장	부처장	처 장

세 한 대 학 교 교 무 입 학 처 장 귀 하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소 속					
학부(과)	성 명	학 번	학년 (졸업)	연 락 처	
				자 택	
				휴대전화	
정 정 사 항	정정내용		정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	관련근거 서 류	
	~ 을	~ 으로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결 재	담당	계장	과 장	부처장	처 장

세 한 대 학 교 교 무 입 학 처 장 귀 하

휴 학 취 소 원

소속 학부 (과)	지도교수	학부(과)장

결	담당	계장	과장	부처장	처장
재					

학부(과)		전공		학년	
학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일반휴학	휴학일자			휴학취소사유	
군 휴 학	입대일자			군 퇴소 일자	
주 소			복학예정학기	년도	학년 학기
연 락 처	자 택			휴대전화	
휴학당시 전공		학부(과)		전공	학년

위와 같이 휴학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군 휴학자 - 군 퇴소 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1부.

경 유	국제교류원

※외국인 학생은 반드시 국제교류원을 경유(신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본 인 (인)

보호자 (인)

세 한 대 학 교 교 무 입 학 처 장 귀 하

-----절 취 선-----

휴학취소원 접수증	
학번	
이름	
휴학취소원을 접수하였음 확인함. 학생봉사실	

부전공 변경원

소속 학부 (과)	지도교수	학부(과)장

1. 소속학과(전공) 기재사항

소 속	학과(전공)		학년
학 번		성 명	인
전화번호		핸 드 폰	

2. 복수전공 허가사항 및 취득학점

복수전공 신청일자			
복수전공 학 과	학과(전공)	복수전공 취득학점	
복수전공 이수과목			

위 본인은 복수전공을 포기하고 복수전공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부전공 학점으로 변경·신청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결 재	담당	계장	과장	부처장	처장

세 한 대 학 교 교 무 입 학 처 장 귀 하

교차수강(당진⇔영암)신청서

학과장(지도교수)

소 속							
학부(과)/전공		학년	학 번	성 명	구 분		
					캠퍼스구분	영암 / 당진	
					연락처		
교 차 수 강 교 과 목 내 역							
번호	개설코드	이수구분	교 과 목 명	학점	교 수 명	캠퍼스구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학사에 관한 규정 제33조 1(교차수강)에 의거 상기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희망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한대학교 교무입학처장 귀하

결 재	담 당	계 장	과 장	부처장	처 장

<별지 제19호 서식>

성 적 정 정 원

결 재	계 장	과 장	처 장

학 부(과)		전 공		학 년	
학 번		성 명			

성 적 정 정 란

정 정 전											
학수번호	분반	과 목 명	학점	출석	중간	기말	과제	기타1	기타2	총점	평가
정 정 후											
학수번호	분반	과 목 명	학점	출석	중간	기말	과제	기타1	기타2	총점	평가

위와 같이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오니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성적정정은 상대평가가 가능한 범위에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 ② 상대평가 등급비율을 벗어난 성적정정은 반영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첨부: 성적처리내역서, 출석부(사본), 사유서

년 월 일

담당교수

①

세 한 대 학 교 총 장 귀 하

소속변경 신청서

현 소속 학부(과)	담당	학부(과)장	소속 변경 학부(과)	담당	학부(과)장

본인은 학칙 제48조 소속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거 소속변경을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 속	학과(전공)		학년
학 번		성 명	(인)
전화번호		핸드폰	
구 분	소속변경 학부(과)(전공)		소속변경 학년 학기
소속변경			

년 월 일

세한대학교 교무입학처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삭제2023.04.24.)